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72-01

대외협력

국가별 환경분석 ...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South Korea

2020. 12.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20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대외협력 - 국가별 환경분석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International Cooperation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South Korea

2020.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외협력 - 국가별 환경분석 -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책 임 연 구 원 : 고유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참 여 연 구 원 : 허 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배경)** 남한과 북한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관련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상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및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남북 경제교류에 장애가 될 것임
 - 대북제재 직전까지 남북의 교역액은 매년 15% 이상 증가하여 27억 달러 이상의 규모였으며, 대북제재 해제 시 남북 간의 교역은 경제활동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 지식재산권은 중국적으로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예상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음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식재산권 분야의 남북협력은 미진한 상황이기에 타 분야와 같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활발히 교류협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연구목적)**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추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과 협의를 위한 소통 채널 모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러한 방안 모색은 정확한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변화와 북한 발명공보를 토대로 북한 지식재산권 현황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을 선행하고자 함

제2장 남북한 지식재산의 환경 분석

-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
 - (국가기관)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중 발명과 특허 업무는 국가과학원과 그 산하조직인 발명총국에서 관장하고 있음

- 상표와 공업도안 업무는 계량 및 품질감독국으로부터 독립한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허대리사무소) 지식재산 법률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15개의 특허대리사무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존에 알려진 KS-KP 법률사무소(KS-KP Law Office)와 평양기술무역센터(Pyongyang Technical Trading Centre)에 대한 운영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 현재까지 북한은 16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였고 남한은 이보다 많은 20개의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조약은 11개로 조사되고 있음
- 북한은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에 우선을 두고 있는 정책목표에 따라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조약 가입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임
 -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남한보다 먼저 가입하며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남북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WIPO를 통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PCT, 마드리드 의정서 등 국제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허) 최근 10년간 북한은 해외 국가당 10건 내외의 특허 출원을 한 반면, 이집트에 69건, 영국에 44건, 브라질에 41건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
 - (상표) 중국(3,330건)은 2009년 북한에 190건을 출원한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18년에는 714건의 상표 출원을 한 반면, 독일(967건)과 이탈리아(879건)는 전체적으로 많은 출원에도 불구하고 출원 건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디자인) 최근 10년간 북한에 100건 이상 출원한 국가는 독일(125건), 이탈리아(115건), 프랑스(112건)밖에 없으며, 미국, 일본은 2016년부터 북한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 북한의 남한 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경우는 단 1건 있었으나, 등록 거절됨
 - PCT를 통한 국제 출원 방식으로 북한 국적의 발명자가 제3자를 통해 남한에 특허를 출원

한 경우는 2건이었으나, 등록료 불납으로 인해 소멸됨

- 북한은 남한 국적자의 특허와 상표 출원을 거부해 오다 1995년부터 상표에 한해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인정함
 - 그러나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남한 국적의 출원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거나 심사를 거절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북한 내 지식재산권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발명공보를 통한 북한 내 발명·특허 등록 현황

- 북한의 발명공보를 살펴보면, 등록건수가 월등하게 높은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 발명권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특허권은 발명권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북한에서도 과거에 비해 개인 기업의 권리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통적으로 출원을 많이 한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국가기관과 대학에서는 발명의 실시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의 비중이 높으나, 개인은 대부분 특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발명 또는 특허보다는 대부분 실용기술의 개발에 치중되어 있어 기술의 고도성보다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고안하여 만드는 것에 치중되어 있음

제3장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

□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

-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선언 및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함
 -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및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양국은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및 현지 공동조사 실시에 합의함
-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및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 공동 진행에 합의하고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추진을 구체화함

□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성 만월대의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동 구축하여, 디지털 전시회를 개최함
- 한반도의 언어 통일 준비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고자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동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남한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법·제도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

-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1년마다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음
 - 또한 남북의 통일 과정 또는 통일 후 통합 과정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

-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1992년 체결된 ‘부속합의서’에 남북한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됨
- 1990년대에는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해외동포의 중재교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력을 전개하였고,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부에서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별도로 편성·지원 하였음
 - 그러나 농업 분야 기술 외에 북한의 과학기술 주무부서인 과학원과의 협력은 없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학과 출연(연)의 남북 과학기술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협력도 크게 증가함
 - 한국천문연구원은 남북협력연구를 위해 중국, 네덜란드, 몽골 연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국과학원 등을 통해 북한의 평양천문대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등 2015년 이후 출연(연)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저작권 분야의 교류협력

- 저작권 분야도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통해 상호 저작권 보호에 합의함
 - 이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실천 조치가 없어서 실질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음
- 북한은 내각 산하에 저작권 사업을 총괄하는 ‘저작권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상호 합의함
-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 저작물의 남한에서의 사용에 대한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한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전협상권을 부여함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본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에 대한 남북사 회문화협력사업(자)을 승인받음

제4장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협력 방안

□ 대북제재가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에 미치는 영향

- 북한은 2006년부터 UN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에 의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음
 - 무기 및 관련물자의 수출금지, 여행금지, 과학 및 기술협력, 금융제재 등으로 인해, 수출, 인적 교류, 과학기술의 특별 교육 훈련,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전 분야에서 교류가 불가함
- 다만, 미국 대북제재규정에서 포괄적 면제사항*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예외 사항이 존재함
 - * 제510.517조의 포괄적 면제대상 : 특허, 상표를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의 신청·취득, 거래, 침해소송 등의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
- 면제대상에 의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의 신청 및 취득, 침해소송의 제기 및 방어에 대한 거래가 가능함
 - 지식재산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북한 주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 남북의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한 활동이 대북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금융서비스 제한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교류 방법보다는 우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영향

- 정부는 두 차례 합의를 통해 상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합의를 이룸
 - 1992년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의 부속합의서'에서 상호 지식재산권 보호에 합의함
 - 2000년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호 투자자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투자자산 보호 원칙에 합의함
 - 국제협약 관련 국제회의에서 남북한 대표단 간 비정례적 실무회의 추진함
- 민간 차원에서는 저작권 분야 중심의 교류는 추진되었으나, 산업재산권 분야는 교류협력이 전무함
 - 북한은 경제적 이득이 있는 대남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나, 산업재산권의 교류에는 남북 기술 수준의 차이에 의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남북한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 정부주도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
 -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전담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먼저, 남한만 독자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 지원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지식재산협력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함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같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확대 구성하여야 할 것임
 - 남북한 인원이 상시 공동 근무하며 남북 당국 또는 민간 지식재산권 협력의 창구로 활용하여 남북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협력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의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지원
 - 북한 시장이 개방되면, 각국에서는 북한에 지식재산권 출원이 일순간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현 북한의 특허행정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물량을 관리 및 처리가 어려울 것임
 - 남한의 특허행정시스템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도 구축되고 있고, 남미까지 수출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특허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북한은 IT발전에 도움이 되고, 특허정보 등이 표준화되어 남북한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임
- 선행조사의 아웃소싱 지원사업
 - 북한 내 외국인 출원에 대한 선행조사를 남한이 맡아서 하자는 기존 논의가 있었으나, 아웃소싱을 해야 할 정도로 북한에서의 특허 출원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북한에 실질적인 이

익이 안 되어 활용성이 없을 것임

- 다만, 역으로 남한에서 북한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행조사의 아웃소싱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북한은 수입과 남한의 심사시스템이나 법률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의 상이한 지식재산권 체계와 심사기준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교육의 의미도 있을 것임

○ 지식재산권 전담 대리인 선임

- 남북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있는 상호 보호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대리할 전담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함
- 남한 국적자는 북한에 지식재산권 출원 시 대리인을 통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방북이나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저작권과 같이 산업재산권에서도 대북 대리에 대한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남북 대리인 간의 접촉 절차의 간소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북 지식재산 전문가 민간 교류협의체 운영

- 민간에서 점진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되는 교류협의체를 운영할 필요 있음
- 산학연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정부는 교류협력 초기에 지원 및 보조해주는 역할 수행함
- 남북 지식재산 공동사업 및 행사 개발 추진, 연구활동 지원,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자료 발간 등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류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민-관 협력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지식재산권 연구정보 제공 및 관련 도서 교환

- 2019년 북한 변리사 측은 중국을 통해 남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도서를 요청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북한 지식재산 전문가에게 남한의 지식재산 정보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것임
- 전문 도서 교환 등을 통해 북한 전문가 그룹과의 합리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북한의 특허수수료 체계 등 북한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음

○ 제3국을 통한 정기적인 지식재산권 세미나 개최

- 협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인 교류 만남은 어려운 상황임
- 2018년 대한변리사회는 북측에 남북협력 논의를 위한 방문을 제안하였으나 무산된 적이 있음
- 남한의 주최하에 제3국(중국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 전문가와의 교류를 모색해 봐야 할 것임

제5장 결론

-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남북의 상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분석함
 - 또한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방안의 도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먼저, 남북 교류협력 방안의 도출 과정도 협상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양 당사자들 사이에 협상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남북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북한은 쉽게 협력의 논의의 장에 나서기 쉽지 않음
 - 지식재산 교류가 상호 이익이 되는 서로에게 윈윈게임이라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발굴하여 제공할 필요 있음
 - 간단하지만 지식재산권 연구정보 상호 관련 도서 교환 같은 지원사업은 북한의 니즈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협력을 통해 북한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실질적인 이익을 반영하고 남한은 현시점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선행조사 아웃소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을 이루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먼저 시도해 볼 필요 있음
 - 전문가 간의 교류나 연구자들 간의 교류, 법령 등 문헌의 교류 등을 위한 전문가 교류협의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제 1 장	서 론	1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II. 연구의 범위	5
제 2 장	남북한 지식재산의 환경 분석	7
	I.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 현황	9
	1. 개관	9
	2.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10
	3. 북한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	11
	II.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	14
	1. 개관	14
	2. 발명총국	16
	3.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	17
	4. 북한의 특허대리사무소 현황	17
	III.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19
	IV. 남북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22
	1. 개관	22
	2. WIPO를 통한 북한의 국제 출원 현황	23
	3. 북한의 남한 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29
	4. 남한의 북한 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30
	V. 발명공보를 통한 북한 내 발명·특허 등록 동향	31
	1. 개관	31
	2. 북한의 발명·특허 등록 동향	32

제 3 장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

39

I.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	41
1.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41
2. 한강하구 공동이용	45
3. 금강산 관광	47
II.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49
1.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49
2. 거래말근사전 남북공동편찬	50
3.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북한 참가	50
4. 하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출전 및 공동 개최 추진	51
III. 법·제도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	52
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52
2. 통일법제 구축	54
IV.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	55
1.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체결	55
2. 1990년 초기 해외동포 중재를 통한 간접협력	55
3. 1990년 후반 공동연구 등 남북 교류의 확대	56
4. 2000년대 초반 정책 연구와 조사 연구의 확대	56
5. 민간 기업의 남북 ICT 협력 추진	57
6. 최근 출연(연) 남북협력 추진 사례	57
7.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계획 수립	59
V. 저작권 분야의 교류협력	65
1. 월북 작가 작품의 해금과 저작권 분쟁	65
2.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체결	65
3. 판례를 통한 저작권 보호 기준 확립	65
4.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신설	66
5.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합의	67
6.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 승인	67
7. 남한 법원과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공조	68

제 4 장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협력 방안	69
	I. 대북제재가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에 미치는 영향	71
	1. 지식재산권 교류와 연계성을 가진 대북제재 내용	71
	2. 대북제재의 지식재산권 교류 영향	74
	II.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현황	75
	III. 기존 연구에서의 교류방안의 문제점	76
	1. 남북 상호 간의 지식재산권의 인정을 위한 노력	77
	2. 상호 교역 확대를 통한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 노력	78
	IV. 남북한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79
	1. 개관	79
	2.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81
	3.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87
제 5 장	결 론	91
	참고문헌	95

표 목차

표 1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대외개방정책 변화	11
표 2	북한 발명법 개정 연혁	12
표 3	북한 상표법 개정 연혁	13
표 4	북한 공업도안법 개정 연혁	13
표 5	특허대리사무소 현황	17
표 6	남북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동시 가입 현황	19
표 7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21
표 8	남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22
표 9	북한의 해외 주요국가 특허 출원 현황	23
표 10	해외 주요국가의 북한 내 특허 출원 현황	24
표 11	북한의 해외 주요국가 상표 출원 현황	25
표 12	해외 주요국가의 북한 내 상표 출원 현황	26
표 13	북한의 해외 주요국가 디자인 출원 현황	28
표 14	해외 주요국가의 북한 내 디자인 출원 현황	28
표 15	북한 내 발명 및 특허 등록 현황	31
표 16	월별 발명 및 특허 등록건수	32
표 17	산업 분야별 등록 현황	35
표 18	출원인 형태별 발명권 및 특허권 건수	37
표 19	대학, 연구소, 공장별 출원인 상위 기관	38
표 20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53
표 21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54
표 22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기본계획(초안)(2003)의 목표 및 과제	61
표 23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기본계획(초안)(2009)의 목표 및 과제	63
표 24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2015)의 목표 및 과제	64
표 25	남북 합의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75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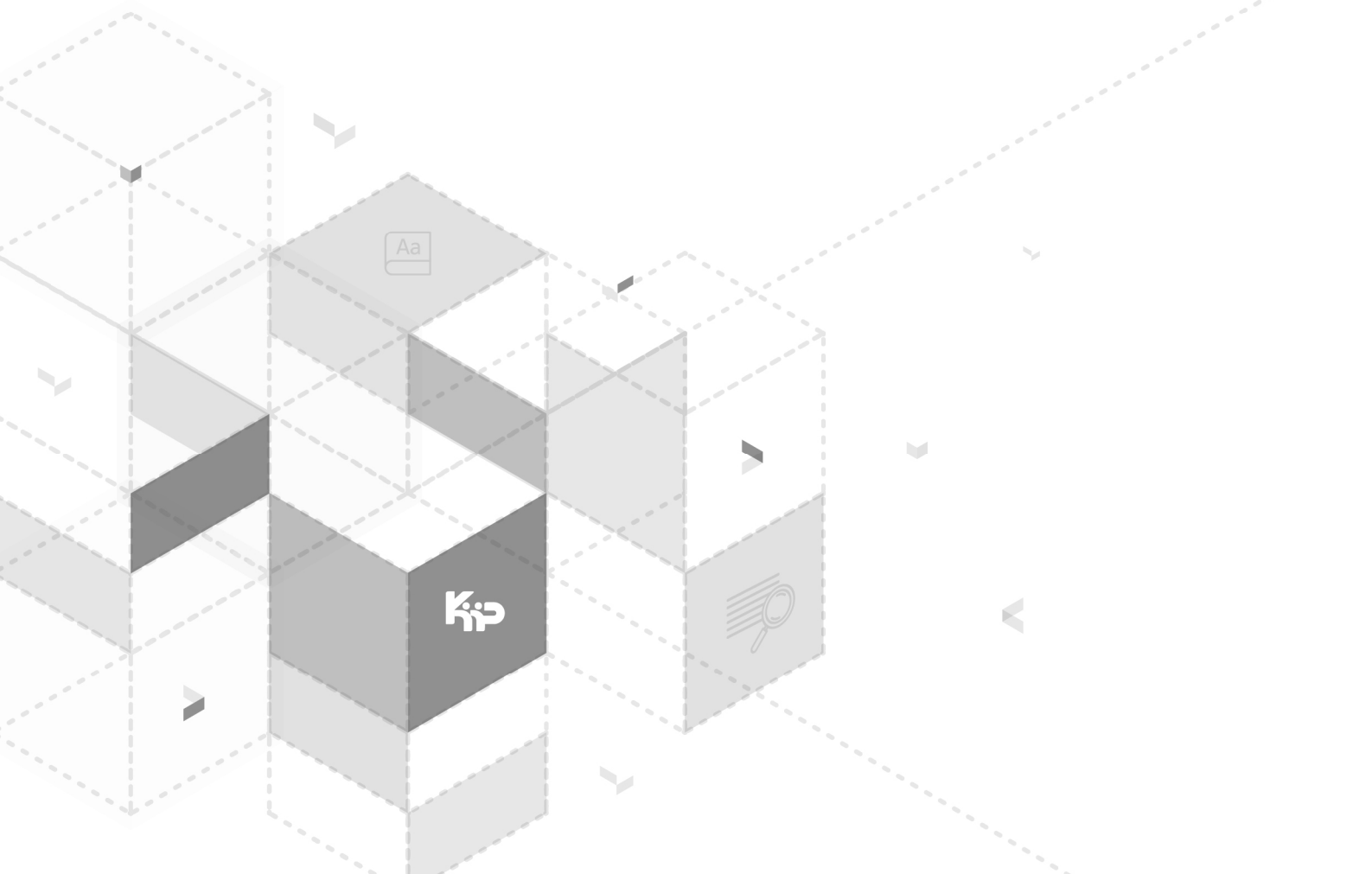
그림 1	북한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15
그림 2	남북한의 PCT 출원 현황	25
그림 3	남북의 마드리드 출원 현황	27
그림 4	발명 및 특허 등록 월별 현황	33
그림 5	북한 지식재산권의 권리별 등록 분포도	33
그림 6	IPC 코드 분류별 등록 현황	34
그림 7	출원인 형태별 등록 현황	37
그림 8	남북지식재산협력센터(가칭) 발전 방향	81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I. 연구의 범위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남북 분단이 70년 이상 장기화되고 정치적인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단절된 교류 속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호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한 모두 파리협약, PCT(특허)조약, 마드리드(상표)조약 등에 가입하고 있어 상호 출원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북한은 남한 국적자의 출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북한 내 지식재산권 등록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9년 WIPO의 자료에 따르면, 롯데와 매일유업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북한에 상표 출원을 하였으나 거절되는 등 최근 10년간(2009~2018년) 남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 상표 출원한 63건 모두 등록이 거절되어, 북한에서 우리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애플사는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WIPO를 통한 국제상표등록 절차를 이용하여 북한에 약 60건의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 등 최근 10년간 미국은 678건을 출원하였으며, 중국은 3,300건, 독일은 967건의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지식재산권이 북한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북한에서 활동하게 될 우리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클 것이다.

비록 2016년 UN의 포괄적인 대북제재 확대에 의해 남북한의 교역액은 급감하였으나, 대북제재 직전까지 남북 교역량은 매년 증가하여 27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다. 앞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남북 간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주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경제교류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며 지식재산권 선점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 간 지식재산권에 대해 확실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 남북한은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의 부속합의서(1992년)에서 상호 지식재산권 보호에 합의했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년) 등을 통해 상대방 투자자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투자자산 보호 원칙에 합의하였으나,¹⁾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식재산권 합의 이행을 위한 당국 간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11년 만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²⁾ 양국의 평화와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남북한은 2019년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평양공동선언’을 선포하고 한반도의 번영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시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확대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교류협력과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에서도 실질적인 교류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비록 북미관계의 악화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예전만 못하고 많이 경색되었으나,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실효적인 협력의 방향성과 소통 채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 사항

구분	합의 내용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2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9조 제5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 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제1항)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제2조 제2항)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경협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 보도문」 (2003.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북정상회담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차 남북정상회담 (2018.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위한 ‘판문점선언’ •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2차 남북정상회담 (2018.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 의지 재확인 •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 약속 • 정상회담 정례화·수시화의 실천적 행보
3차 남북정상회담 (2018.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채택 • 교류협력 증대 및 민족경제 균형 발전 •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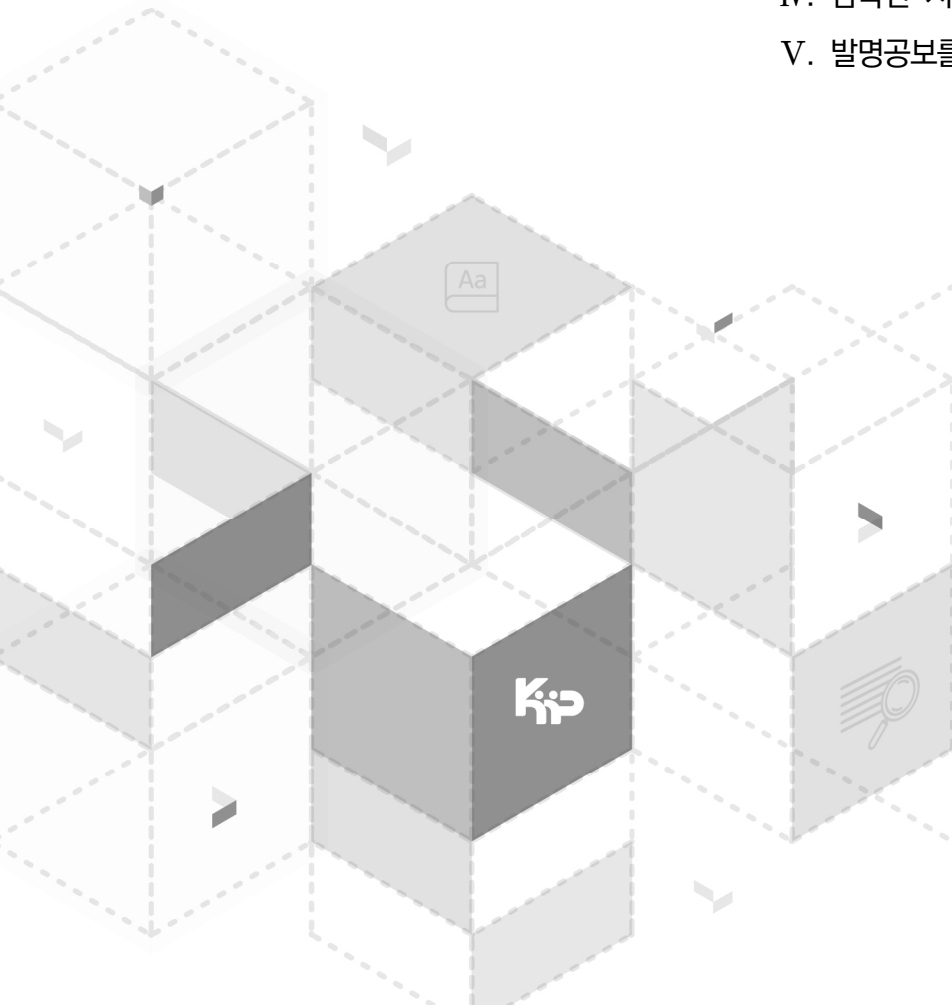
II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과 협의를 위한 소통 채널 모색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방안 제시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북한 발명공보를 토대로 북한 지식재산권 현황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을 선행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교류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체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이에 타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추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력 방법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시적 의견전달 루트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 연계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문협의체의 활용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 지식재산의 환경 분석

- I.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 현황
- II.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
- III.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 IV. 남북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V. 발명공보를 통한 북한 내 발명·특허 등록 동향



I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 현황

1. 개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은 근대적 소유권 개념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산물로서 사적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법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충된다.³⁾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유주의 국가와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인 발명자 제도를 두고 있다. 구소련, 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던 발명자증 제도 발명증명서와 함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대신 당해 발명을 할 권리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⁴⁾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바라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지식재산권 기능은 자본가들에게 거액의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⁵⁾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특허권,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특허 분쟁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발명이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와 특정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만 귀속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⁶⁾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자본가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정치 체제에 반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 보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발명자증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권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북한은 발명자증 제도를 유지하고 발명권을 위주로 하면서 특허권도 보호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특허제도시스템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발명권을 강조함으로써 발명의 보호방식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명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특허권 제도도 활용함으로써, 대외 투자유치나 첨단기술 도입의 걸림돌을 해결하고 있다.⁷⁾

3) 권재열 외, 「북한의 법체계: 그 구조와 특색」, 집문당, 2004, 380면.

4) 박정원, “북한의 발명법에 관한 분석”, 「아시아법제연구」 제01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16면.

5) 윤권순,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추진 방안」, 통일부, 2004, 8-9면.

6)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간략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7) 윤권순,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추진 방안」, 통일부, 2004, 10면.

2.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북한은 해방이후 주체적인 국가 건설과 자주위업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고 자주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을 자국의 헌법에 명시하였다. 북한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⁸⁾ 제50조에서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고 하며, 제51조에서는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1960년대에는 국내 자원에 입각한 자립적 공업체계 확립에 과학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과학 분야의 개척을 비롯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생산에 응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기초과학부문의 적극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⁹⁾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법을 제·개정하여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에 특허법에 해당하는 ‘발명 및 창고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여 주변국과의 정치적 동맹관계가 해체되고, 고난의 행군 시기 등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하면서 외국인투자확대 등 대외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고자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조선 합작경영법을 제정하였다.¹⁰⁾ 이러한 경제 상황과 정치 변화로 인해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도 연구개발 장려 및 보호와 개방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¹¹⁾ 이에 기술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성과 보호와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북한의 개방정책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법제를 제·개정하여 왔다.¹²⁾

8)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채택된 이후 197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7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은 2016년 6월 개정되었다.

9) 이장재,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체계”, 『과학기술정책』 제2권 제17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8면.

10) 구대환, 「북한 지재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17-18면.

11) 허인,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특허청, 2019, 4면.

12) 김해정,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현황 및 제언”,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5면.

▼ 표 1 |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대외개방정책 변화

구분	과학기술정책	대외개방정책	지식재산 관련 법제
~ 1980년대	• 내국인의 발명을 장려, 북한 실정에 맞는 독자적 기술개발 강조	-	•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1986)
1990년대	• 선진기술개발을 강조하는 한편 파리협약 등 국제적인 산업재산권 협약에 활발하게 가입	•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법적 토대 마련 후 외국인투자관계법 도입	• 「발명법」 제정(1998)
2000년대	• 첨단기술 도입기로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직접 투자 유치 및 국제협력 강조	• 경제특구 확대	•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2001), 「원산지명법」(2003), 「컴퓨터소프트웨어법」(2004) 제정
2010년대	• 실용 분야의 연구개발 집중 투자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적극적인 외자유치 강화	•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개정

3. 북한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

북한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헌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74조에서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여¹³⁾ 발명과 특허에 대한 보호를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토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명법, 공안도안법,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2003년 이후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원산지명법 제정을 통해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 원산지명에 대한 보호·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법적 제도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1) 발명법

북한의 발명법은 과학기술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다그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북한의 발명정책은 과학기술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¹⁴⁾ 한국 전쟁 이후 과학기술에 의거한 경제성장전략을 국정의 우선지표로 내세운 북한은 과학기술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의 추진과 함께 ‘과학기술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

13)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2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까지는 명문으로 저작권과 발명권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지만, 1998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부터는 저작권, 발명권과 함께 특허권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권이 북한 헌법에 근거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개정 헌법이 시행되면서 부터이다(이주환, “북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연구 - 북한에도 특허청이 있을까?”, 『연세법학』 제33호, 연세법학회, 2019, 각주 21).

14) 육소영 외,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센터, 2003, 28면.

러한 정책과 함께 1967년에는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¹⁵⁾ 북한의 ‘발명 및 창안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건국 초기부터 과학기술발전을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에 발맞춘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특허권과 다른 개념인 발명권을 함께 규정하였다. 1978년 외국인에게만 특허권을 허용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발명권과 창의고안권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1986년 개정 시에는 북한 주민에게도 특허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1998년에 동 규정을 ‘발명법’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으로 분리 개정하였다. 발명법은 1999년, 2011년, 2014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표 2 | 북한 발명법 개정 연혁

제·개정 일자	내용
1967년 10월 5일	•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제정
1978년 12월 27일	•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개정(1차 일부개정)
1986년 6월 28일	•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개정(2차 전면개정)
1998년 5월 13일	• ‘발명법’ 신규 제정
1999년 3월 11일	• ‘발명법’ 개정(1차 일부개정)
2011년 12월 21일	• ‘발명법’ 개정(2차 일부개정)
2014년 12월 10일	• ‘발명법’ 개정(3차 전면개정)

(2) 상표법

상표에 관한 내용은 1968년에 공업도안과 함께 단일법으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해 왔다. 동 규정은 외자유치의 필요성에 따라 1983년에 전면개정되었고, 조선합작경영법 등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 기술과 투자의 필요성에 따라 1986년, 1991년에 재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이후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1998년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상표법인 독자적인 법률로서 제정된 것은 1998년으로 볼 수 있으며, 1999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6년에 총 7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5) 허인,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특허청, 2019, 14면 재인용.

▼ 표 3 | 북한 상표법 개정 연혁

제·개정 일자	내용
1968년 1월 1일	•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제정
1983년 5월 2일	•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개정(제1차 전면개정)
1986년 6월 28일	•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개정(제2차 일부개정)
1991년 3월 13일	•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개정(제3차 일부개정)
1998년 1월 14일	• '상표법' 제정
1999년 2월 26일	• '상표법' 개정(1차 일부개정)
2005년 8월 2일	• '상표법' 개정(2차 일부개정)
2008년 3월 11일	• '상표법' 개정(3차 일부개정)
2011년 6월 13일	• '상표법' 개정(4차 일부개정)
2011년 12월 21일	• '상표법' 개정(5차 일부개정)
2012년 11월 13일	• '상표법' 개정(6차 일부개정)
2016년	• '상표법' 개정(7차 일부개정)

(3) 공업도안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의 디자인보호법에 대응되는 북한의 공업도안법은 1968년 제정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에서 상표, 본래명칭(우리의 지리적 표시 내지 원산지 표시에 해당)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1998년 분리 제정되어 독자적인 법률이 되었고, 1999년, 2005년, 2011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 표 4 | 북한 공업도안법 개정 연혁

제·개정 일자	내용
1968년 1월 1일	•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제정
1983년 5월 2일	•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개정(제1차 전면개정)
1986년 6월 28일	•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개정(제2차 일부개정)
1991년 3월 13일	•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개정(제3차 일부개정)
1998년 6월 3일	• '공업도안법' 제정
1999년 1월 14일	• '공업도안법' 개정(1차 일부개정)
2005년 8월 2일	• '공업도안법' 개정(2차 일부개정)
2011년 12월 21일	• '공업도안법' 개정(3차 일부개정)

II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

1. 개관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통하여 내용을 조사 및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또한 자료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이 통합 후 재분리되는 등 내각 내 기관들의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산하기관 및 업무의 이관이 추진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증 조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중 발명과 특허 업무는 국가과학원과 그 산하조직인 발명총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상표와 공업도안 업무는 계량 및 품질감독국의 산하조직인 상표 및 공업도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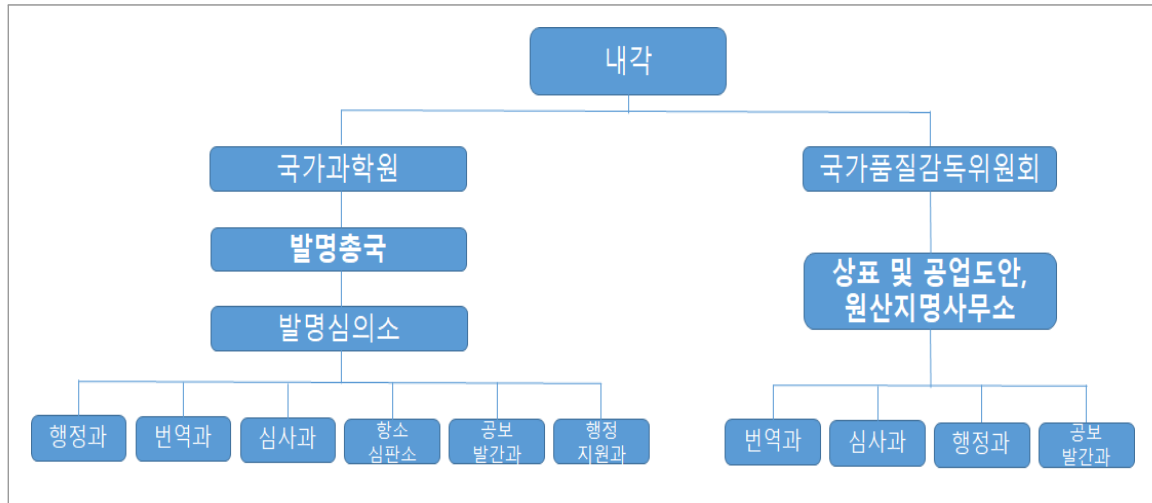
그런데 통일부가 발간하는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보면, 내각 산하기구로 국가과학원 산하 ‘발명총국’과는 별도로 내각 산하 기타 조직 중의 하나로 ‘국가발명총국’이 따로 소개되어 있다. 2014년에는 각 기관의 장이 서로 달랐으나(발명총국장 김일혁, 국가발명총국장 리철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국장은 강규철로 동일하고 부총국장이 서로 달랐으며, 2018년부터는 양 기관의 총국장과 부국장 각각 동일 인물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어느 기관이 북한의 정확한 지적재산권 관리 기관인지에 대한 파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평양에 ‘MSIP Pyongya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북경명석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¹⁶⁾와 KOTRA 베이징무역관을 통한 북한 모란봉특허 및 상표 대리소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구는 내각 국가과학원 산하의 발명총국이며, 품질감독국 산하에 있던 상표 및 공업도안처는 품질감독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명칭도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16) 최은석·허인,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 2014, 31면.

▼ 그림 1 | 북한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국가과학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업무의 총괄·조정 등과 대내외 정책수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명총국은 남한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특허, 창의고안, 발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발명심의회는 발명총국 소속으로 특허, 창의고안의 접수, 심사, 등록 등의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표 및 공업도, 원산지명사무소는 계량 및 품질감독국 산하에 있던 상표 및 공업도안처에서 계량 및 품질감독국이 국가품질감독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상표 및 공업도, 원산지명사무소로 변경되었고, 상표 및 공업도안에 대한 정책수립, 상표 및 공업도안의 접수, 심사,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내각 산하 기타 조직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으로 추정되는 조직으로는 조선과학 발명위원회, 국가소프트웨어 산업총국 그리고 평양국제과학기술정보센터 등이 있다.¹⁷⁾

한편, 지난 2019년 8월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를 통해 ‘지적소유권국’이라는 기관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¹⁸⁾ 기사에 따르면,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국 국장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는 나라의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경제 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적소유권국’이라는 명칭은 위 글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구로, 기존의 조직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 기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던 발명총국을 대체하는 것인지의 여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¹⁹⁾ 다만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더욱

17) 통일부, “2019년 북한 권력기구도, 주요 인물정보”, 기관별 인명록 등 참조.

18) “북한, ‘지적소유권국’ 설치... 재재산 보호 나서”, 연합뉴스, 2019. 8. 18.

완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만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지식소유권국을 제외한 특허, 상표 관련 기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2. 발명총국

발명총국은 남한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54년 6월 4일에 창립되어 발족 당시에는 내각 직속의 창의고안심사위원회라고 불렀다. 설립 초기 창의고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내각 부수상이었고, 심사위원은 중앙기관 상·부상들, 과학원 일꾼들, 대학학장, 부학장들이었기에 실질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적창작물에 대한 보호 문제가 현실화되자 국가과학원으로 통합된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발명국을 지적창작물에 대한 심의, 등록, 보호,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독립 승격시키고 발명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²⁰⁾

발명총국에서는 기관들로부터 넘겨받은 발명문건들은 분야별로 나누어 심의하고 그 경제적 가치와 과학적 창작성에 따라 특허, 발명과 창의고안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발명과 특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발명총국 산하의 발명심의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특수 분야의 발명에 대한 심의는 특수부문발명심의기관들에서 하며 창의고안등록신청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등록시킨다. 다만 기술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창의고안은 기술평정을 하여 해당 도(시)과학기술행정기관의 합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명총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타국에서 제기되어 오는 특허 문제에 대한 실무처리사업을 한다. 이외에도 발명 및 특허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조성, 컴퓨터망에 의한 자료제공, 발명과 특허 및 비특허정보자료들의 수집 및 입력과 검색, 프로그램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발명총국에서는 ‘발명공보’, ‘특허기술통보’, ‘발명신청공보’ 등의 정기간행물들을 편집, 발행하고 있다.²²⁾

19) 허인,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특허청, 2019, 49면.

20) 구대환, 「북한 지재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7면.

21) 이은정, “북한의 지적재산권”, 「북한법연구」 제5호, 북한법연구회, 2002, 144면.

22) 허인,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특허청, 2019, 50면.

3.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는 품질감독국 산하에 있던 상표 및 공업도안처가 품질감독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는 상표 및 도안에 대한 정책수립, 상표 및 공업도안의 접수·심사·심판 업무를 하며, 심사업무는 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의 상표심사과와 공업도안심사과에서 각각 담당한다.²³⁾

4. 북한의 특허대리사무소 현황

북한의 특허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은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집계되거나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과 현지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전문가의 조사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사무소의 현황을 조사해 볼 수 있다.

▼ 표 5 | 특허대리사무소 현황

	특허대리사무소 명칭	영문 명칭	홈페이지
1	철산 특허 및 상표 대리소	Cholsan Patent and Trademark Agency	175.45.176.14/ko/notice/cholsan
2	대동강 특허 및 상표 대리소	Taedonggang Patent & Trademark Law Office	www.tptloffice.com
3	룡산 특허 상표	Ryong-San & Co. Patent and Trademark	www.rspat.com
4	무지개 특허 및 상표 대리소	Koryo PAT Rainbow	175.45.176.14/ko/notice/rainbow/index.php?en
5	해금강 특허 및 상표 대리소	Haekumgang Patent & Trademark Agency	
6	평양 지적소유권 센터	Pyongyang IP Centre	
7	남산재 특허 상표 대리소	NAMSANJAE Patent & Trademark Agents	
8	오운 특허 사무소	Oun Patent Attorneys	www.ounpatent.com
9	룡성 특허 사무소	Ryongsong Patent Office	
10	금강산 특허 상표 대리소	Kumgangsang Patent & Trademark Agency	

23) 구대환, 「북한 지재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7면.

	특허대리사무소 명칭	영문 명칭	홈페이지
11	준마 특허 상표 사무소	Junma P&T Office of D.P.R Korea	www.dprk-patents.com
12	장수봉 특허 상표 법률 사무소	Jansubong Patent & Trademark Law Office	
13	조선 문수봉 회사	Korea Munsubong Company	
14	모란봉 특허 상표 대리소	Moranbong Patent & Trademark Agency	www.star-co.net.kp
15	묘향산 법률사무소	Myohyangsan Attorneys	

지식재산 법률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²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15개의 특허대리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에 알려진 KS-KP 법률사무소(KS-KP Law Office)와 평양기술무역센터(Pyongyang Technical Trading Centre)에 대한 운영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장수봉 특허 상표 법률 사무소가 대동강 특허 및 상표 대리소와 합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으나,²⁵⁾ 아직까지 두 개의 특허대리사무소는 주소와 연락처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특허대리사무소는 있으나, 북한 내 서버를 이용하거나 북한의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하여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북한의 특허대리사무소를 소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대리사무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평양 지식소유권 센터(Pyongyang IP Centre)

평양 지식소유권 센터(PIPC)는 1980년 7월 북한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회사이다. 창립 초기에는 ‘평양 특허 상표 대리소(Pyongyang Patent & Trademark Agency)’로 시작하였으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현재의 ‘평양 지식소유권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평양 지식소유권 센터는 3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공학박사 등 약 5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북한 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관련 회사로 매년 북한 내 특허, 상표 사건의 약 60%를 대리하고 있다. 특히, 생명 공학, 약리학, 의학, 화학, 전자, 전기, 물리학, 토목 공학, 정보학, 컴퓨터 과학, 농업 공학 등 모든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번역, 초안 작성, 출원, 검색 및 상담, 무효 소송, 라이선스, 기술 이전 및 소송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 www.ipcommunity.org, www.parkerip.com, www.4m-ipagents.com (2020. 3. 4. 방문).

25) 구대환, 「북한 지재산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8면.

(2) 룡산 특허 상표(Ryong-San & Co. Patent and Trademark)

룡산 특허 상표(RSPAT)는 1998년에 설립하여 현재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특허 및 상표 법률회사이다. 북한의 지적소유권협회(KIPA), 북한 공업도안협회(KIDA) 등에 가입하고 다국적 기업 또는 자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명총국과 상표 및 공업도안, 원산지명사무소 출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어 특허, 상표 등의 출원과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번역, 비즈니스 컨설팅,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III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법적인 보호를 위해 WIPO 설립협약,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PCT조약) 등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16개²⁶⁾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으며, 남한은 이보다 많은 20개의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조약은 11개로 조사되고 있다.

▼ 표 6 | 남북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동시 가입 현황

구분	조약명	가입일	
		남한	북한
기구	WIPO 설립협약	1978. 12. 1.	1974. 5. 17.
산업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80. 2. 1.	1980. 3. 7.
특허	특허협력조약(PCT조약)	1984. 5. 10.	1980. 4. 8.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987. 12. 28.	2001. 11. 21.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IPC협정)	1998. 10. 8.	2001. 11. 21.
상표	상표 등록상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98. 10. 8.	1997. 3. 6.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2003. 1. 10.	1996. 7. 3.

26) 북한은 상기 가입한 국제조약 외에 추가적으로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에 서명하였으나(1983. 6. 28.), 아직까지 추가적인 비준 또는 가입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구분	조약명	가입일	
		남한	북한
디자인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확립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2011. 1. 17.	1997. 3. 6.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2014. 3. 31.	1992. 4. 15.
저작권	문화·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6. 5. 21.	2003. 1. 28.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2015. 10. 8.	2016. 2. 19.

북한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조약 가입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WIPO 설립협약에 남한보다 먼저 가입을 하였다. 또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국제조약 중 특허협력조약(PCT조약)뿐만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의 주요 조약인 상표 등록상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확립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등 저작권을 제외한 주요한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대부분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직 남한이 가입하지 않은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특허법조약(PLT) 등에도 가입한 상태이다.

북한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조약 가입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에 우선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책목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조약의 가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현대화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²⁷⁾

이러한 북한의 정책 방향성은 2018년 노동신문에 게재된 ‘지적소유권보호 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라는 김철웅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의 기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⁸⁾ 동 기고문에서 “지식 경제는 산업 부문과 과학 연구 부문들 사이의 경제 기술적 연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지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활용하고, 새로운 첨단 산업을 더 많이 창설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공고히 유지되고 지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명,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유통, 이용이 바로 지적 창조 순환이며, 지적 창조 순환을 위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조건이 전 사회적 범위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된 것이 다름 아닌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적소유권국 국장인 김영철이 밝힌 “우리는 나라의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경제 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27) 박정원, “북한의 발명법에 관한 분석”, 「아시아법제연구」 제01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23면.

28) “북한, 지적소유권보호 제도 강조...대외무역 개방 대비?”, DAILY NK, 2018. 12. 14.

북한이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북한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국제적 조치는 형식적으로 국제기구 및 조약에 대한 준수의 표명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규범과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자세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²⁹⁾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RIPS협정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으로서, 국제 분쟁을 WTO의 강제 관할에 두고 각국의 조약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등 기준에 체결된 지식재산 관련 조약보다도 포괄적이며 실효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³⁰⁾

북한이 기속력이 있는 TRIPS협정에는 가입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국제조약에만 가입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의 적극적 국제조약 가입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형식적 행위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극적 국제조약 가입을 국제조약 준수에 대한 의지표명 이외에 실질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³¹⁾

▼ 표 7 |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조약명	가입일	발효일
WIPO설립협약	1974. 5. 17.	1974. 8. 17.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1980. 3. 7.	1980. 6. 10.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80. 3. 7.	1980. 6. 10.
특허협력조약(PCT)조약	1980. 4. 8.	1980. 7. 8.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1992. 4. 15.	1992. 5. 27.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1996. 7. 3.	1996. 10. 3.
상표 등록상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97. 3. 6.	1997. 6. 6.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확립 로카르노협정	1997. 3. 6.	1997. 6. 6.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2001. 11. 21.	2002. 2. 21.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IPC협정)	2001. 11. 21.	2002. 11. 21.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2003. 1. 28.	2003. 4. 28.
원산지명칭의 보호와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	2004. 10. 4.	2005. 1. 4.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2016. 2. 19.	2016. 9. 30.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2016. 2. 19.	2020. 4. 28.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	2016. 6. 13.	2016. 9. 13.
특허법조약(PLT)	2018. 5. 22.	2018. 8. 22.

29) 박정원, “북한의 발명법에 관한 분석”, 『아시아법제연구』 제01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26면.

30)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 한울, 2017, 413면.

31) 육소영 외,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83면.

▼ 표 8 | 남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조약명	가입일	발효일
WIPO설립협약	1978. 12. 1.	1979. 3. 1.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80. 2. 1.	1980. 5. 4.
특허협력조약(PCT조약)	1984. 5. 10.	1984. 8. 10.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87. 7. 1.	1987. 10. 10.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987. 12. 28.	1988. 3. 28.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96. 5. 21.	1996. 8. 21.
상표 등록상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98. 10. 8.	1999. 1. 8.
국제 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IPC협정)	1998. 10. 8.	1999. 10. 8.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UPOV협약)	2001. 12. 7.	2002. 1. 7.
상표법조약(TLT)	2002. 11. 25.	2003. 2. 25.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2003. 1. 10.	2003. 4. 10.
WIPO 저작권조약(WCT)	2004. 3. 24.	2004. 6. 24.
WIPO 실연·음반조약(WPPT)	2008. 12. 18.	2009. 3. 18.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2008. 12. 18.	2009. 3. 18.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확립 로카르노협정	2011. 1. 17.	2011. 4. 17.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 분류 확립에 관한 비엔나협정	2011. 1. 17.	2011. 4. 17.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전송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2011. 12. 19.	2012. 3. 19.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2014. 3. 31.	2014. 7. 1.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	2015. 10. 8.	2016. 9. 30.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	2016. 4. 1.	2016. 7. 1.

IV 남북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1. 개관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며, 자료 접근에 제약이 따른다. 그나마 북한의 특허 현황은 발명총국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발명공보를 통해 일부의 통계를 추산해 볼 수 있으나,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에는 일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자료가 공개되는 WIPO를 통해 PCT, 마드리드 출원 등 국제 출원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북한 내 남한 국적자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남한 내 북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WIPO를 통한 북한의 국제 출원 현황

(1) 특허

먼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10년간 해외 주요국가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국가당 10건 내외의 특허 출원을 한 반면, 이집트에 69건, 영국에 44건, 브라질에 41건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 강국으로 분류되는 IP5 국가에 특허 출원을 많이 하는 데에 반하여, 북한은 미국(1건), 일본(3건)에의 특허 출원이 거의 없으며, 유럽특허청에는 지난 10년간 11건을 출원하였으나 대부분 2010년, 2011년에 몰려있고, 최근에는 특허 출원이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한 특유의 정치·사상적 특성에 의해 미국, 일본 등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13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이집트,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에 편중되었으나,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영국, 이집트 등에 집중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2016년, 2017년에만 무려 39건의 특허 출원을 하였다.

▼ 표 9 | 북한의 해외 주요국가 특허 출원 현황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르헨티나	-	-	-	-	-	-	-	16	23	-
호주	4	1	-	1	1	-	-	2	1	3
브라질	4	2	-	-	10	6	6	2	3	8
캐나다	1	3	5	1	-	1	-	-	-	-
칠레	1	-	-	1	2	1	1	-	1	-
중국	1	-	-	2	2	-	-	-	2	1
이집트	11	19	-	-	-	19	-	-	-	20
유럽특허청	1	3	3	-	1	1	1	-	1	-
독일	1	1	-	-	-	-	-	-	1	-
인도	-	-	-	-	3	-	-	2	4	2
일본	-	-	-	-	-	-	-	-	-	3
멕시코	2	-	1	-	1	-	1	2	-	-
파키스탄	-	3	-	-	-	-	-	1	-	-
필리핀	-	-	-	-	7	2	7	-	1	2
러시아	1	-	-	1	2	-	-	-	-	-
영국	-	1	1	-	2	11	3	18	4	4
미국	1	-	-	-	-	-	-	-	-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WIPO 출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북한에 특허를 출원한 통계 현황은 2009년에서 2012년의 자료만 공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10년도만 출원 국가를 파악할 수 있고 나머지

연도에는 정확한 출원 국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외 국가의 북한 내 특허 출원 전체 건수를 비교하면 2009년 55건에서 2012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2010년 기준으로 북한에 출원한 국가는 스위스·미국 각 10건, 영국·라트비아 각 3건, 독일·이탈리아 각 2건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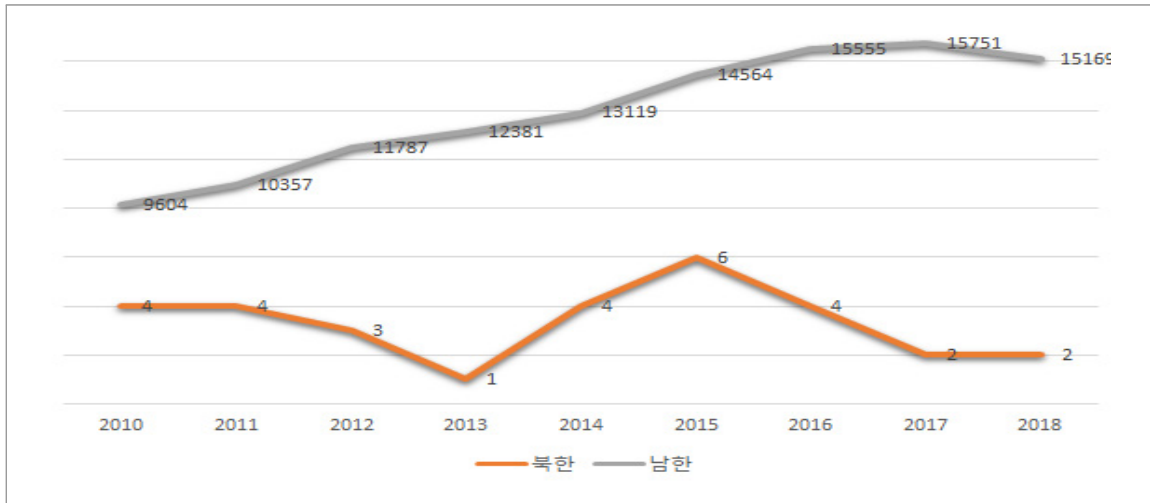
▼ 표 10 | 해외 주요국가의 북한 내 특허 출원 현황

국가	2009	2010	2011	2012
알 수 없음	55	1	39	27
호주	-	1	-	-
브라질	-	1	-	-
스위스	-	10	-	-
중국	-	1	-	-
독일	-	2	-	-
프랑스	-	1	-	-
영국	-	3	-	-
인도네시아	-	1	-	-
인도	-	1	-	-
이탈리아	-	2	-	-
라트비아	-	3	-	-
노르웨이	-	1	-	-
세르비아	-	1	-	-
미국	-	10	-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한편 남북의 PCT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PCT 출원 현황은 2017년 2건, 2018년 2건 등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한의 PCT 출원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에는 15,169건을 출원하였다.

▼ 그림 2 | 남북한의 PCT 출원 현황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2) 상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해외 주요국가 상표 출원을 살펴보면, 북한이 태국에 2015년 한 해 무려 175건의 상표 출원을 하는 등 총 182건으로 가장 많이 상표를 출원하였다. 다음으로는 77건을 출원한 멕시코였으나, 대부분 2010년 전후에 평균 20건 출원을 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급감하여 1~2건의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출원한 국가는 중국으로 매년 5~8건 이상 꾸준하게 출원하여 총 64건의 상표 출원을 하였다. 특히 출원과 같이 미국(14건), 일본(3건)에의 출원 건수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4년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멕시코(77건), 칠레(56건), 이스라엘(50건), 남아공(38건) 등의 국가에 상표 출원을 많이 하였으며, 이후에는 캐나다(49건), 페루(36건), 바레인(33건), 수단(23건) 등의 국가에 집중적으로 출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11 | 북한의 해외 주요국가 상표 출원 현황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르헨티나	-	-	-	2	-	15	-	-	4	10
호주	-	5	2	1	2	7	3	1	-	-
바레인	2	-	-	-	-	6	-	11	10	4
브라질	-	1	2	3	2	4	5	1	1	10
캐나다	-	2	-	-	-	5	33	-	7	2
칠레	5	4	3	13	13	11	3	-	-	4
중국	2	5	4	9	5	12	7	7	5	8
코스타리카	-	-	26	6	-	7	4	-	5	6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럽특허청	-	-	-	-	-	4	-	5	2	4
이스라엘	-	37	3	1	3	1	4	1	-	-
일본	-	-	-	-	-	-	-	-	2	1
요르단	-	8	-	2	7	-	-	-	26	1
멕시코	25	14	19	11	3	1	-	2	-	2
파키스탄	-	-	-	12	-	6	2	11	-	8
페루	-	2	-	1	-	-	3	1	28	1
필리핀	-	4	-	1	6	1	1	8	27	5
남아공	17	10	5	4	1	-	-	1	-	-
수단	-	-	-	1	-	-	6	8	1	7
태국	-	-	2	-	1	-	175	3	-	1
미국	1	5	-	-	-	1	1	-	2	4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최근 10년간(2009~2018년) 해외에서 북한에 상표를 출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3,300건, 독일 967건, 이탈리아 879건, 미국 678건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하였다. 중국은 2009년 북한에 190건을 출원한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18년에는 714건의 상표 출원을 한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체적으로 많은 출원에도 불구하고, 출원 건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10년 전에 비해 북한 내에 상표를 출원하는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매년 1~2건의 상표를 북한에 출원 하였으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2018년에는 한 해에만 42건의 상표 출원을 하였다.

▼ 표 12 | 해외 주요국가의 북한 내 상표 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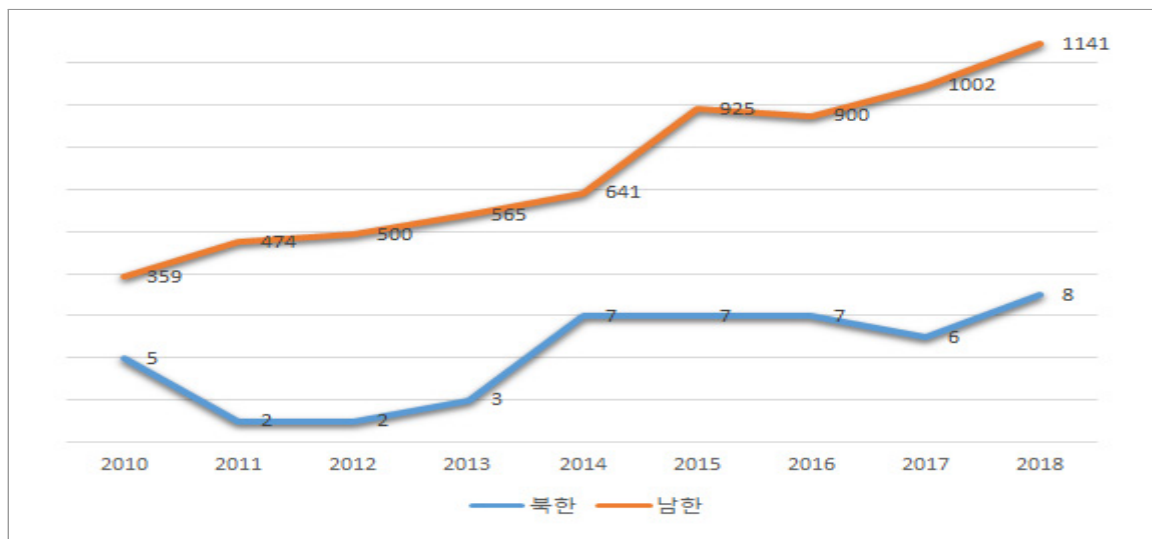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오스트리아	12	19	14	23	8	10	10	9	8	2
호주	29	31	17	25	14	17	16	27	13	8
벨기에	28	23	49	43	35	29	47	24	56	31
스위스	121	132	92	107	84	75	80	56	44	36
중국	190	255	293	247	246	256	170	422	507	714
독일	151	117	108	117	77	105	78	92	61	61
프랑스	108	85	83	69	54	52	44	24	33	36
영국	47	23	38	31	31	59	31	20	18	50
인도	1	-	-	11	-	22	13	12	14	11
이탈리아	109	125	104	108	96	71	84	66	54	62
일본	3	-	-	3	1	-	-	-	3	1
한국	3	2	2	4	2	2	4	1	1	42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룩셈부르크	17	6	8	10	9	7	20	24	6	9
네덜란드	42	28	11	13	9	14	10	1	5	6
러시아	33	19	49	47	35	27	34	22	24	17
스웨덴	6	5	10	17	4	6	7	3	2	2
터키	29	33	24	35	47	40	23	21	5	15
미국	95	132	80	74	1	-	7	53	131	105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WIPO 출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마드리드 출원 현황은 2014년도 7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증가한 이후 매년 6~8건의 출원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남한의 마드리드 출원 건수는 2010년 359건에서 4년 후인 2014년 641건, 다시 4년 후인 2018년 1,414건으로 4년마다 약 두 배 증가하였다.

▼ 그림 3 | 남북의 마드리드 출원 현황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3) 디자인

북한의 10년간 해외 주요국가 디자인 출원을 살펴보면, 인도에 5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출원하고 있으나 출원 건수 중 대부분이 2014~2015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출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멕시코에 31건, 파키스탄에 16건, 호주에 13건 등의 국가에 출원하고 있다. 북한이 남아공(9건), 캐나다(6건), 칠레(6건) 등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한 시기는 2013년 이전이며, 그 이후에는 기존의 국가 대신 필리핀(4건), 유럽특허청(3건), 알제리(3건) 등의 국가에 출원하고 있어 해외 출원 국가에 변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13 | 북한의 해외 주요국가 디자인 출원 현황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알제리	-	-	-	-	-	2	-	1	-	-
아르헨티나	-	-	-	-	-	-	-	-	2	-
호주	2	-	4	1	-	-	-	-	-	6
브라질	-	-	1	-	-	-	-	2	-	-
캐나다	-	1	1	3	-	-	-	-	-	1
칠레	5	-	-	-	1	-	-	-	-	-
유럽특허청	-	-	-	-	-	-	-	1	1	1
프랑스	1	-	-	-	-	-	-	1	-	-
인도	-	-	2	-	140	-	377	-	-	-
멕시코	-	-	-	1	27	-	2	-	-	1
파키스탄	-	-	-	-	9	-	-	4	-	3
필리핀	-	-	-	-	-	-	-	2	2	-
남아공	-	-	1	5	3	-	-	-	-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해외에서 북한에 디자인을 출원한 국가 중 최근 10년간(2009~2018년) 100건 이상 출원한 국가는 독일(125건), 이탈리아(115건), 프랑스(112건)밖에 없다. 그밖에 96건을 출원한 스위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25건 이내의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독일과 스위스는 초반(2009년)의 출원 건수에 비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은 2016년부터 북한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남한은 2018년 1건이 유일한 북한 내 디자인 출원이다.

▼ 표 14 | 해외 주요국가의 북한 내 디자인 출원 현황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알 수 없음	1	4	1	2	4	4	2	-	7	-
벨기에	3	1	2	9	2	1	-	-	1	1
스위스	13	18	22	17	5	6	4	3	5	3
독일	20	28	28	29	9	3	7	1	-	-
프랑스	3	9	11	15	13	12	5	13	29	2
영국	2	-	-	-	-	-	1	1	5	5
이탈리아	12	12	11	10	22	8	16	7	6	11
일본	-	-	-	-	-	-	-	1	-	2
한국	-	-	-	-	-	-	-	-	-	1
룩셈부르크	1	-	-	-	3	4	-	1	-	1
네덜란드	4	6	1	3	3	1	-	-	-	1
세르비아	1	1	1	1	1	1	-	2	1	-
미국	-	-	-	-	-	-	-	2	5	15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3. 북한의 남한 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현재까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가 남한 특허청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경우는 단 1건 있었다. 2003년 한·북·중 국적을 가진 3인은 북한의 발명자가 개발한 ‘금 수용액의 제조방법’³²⁾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유추해 낼 수 있는 공정조건에 해당되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통상의 예측가능한 정도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다.

국내 출원은 아니지만 PCT를 통한 국제 출원 방식으로 북한 국적의 발명자가 제3자를 통해 남한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2건으로 확인된다. 출원된 2건 모두 2005년 6월 북한에 출원된 감속기 관련 발명이고 발명자가 유사하다. 출원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자로 한국의 특허법인을 통해 출원하였다. 2005년 12월 PCT를 통해 출원된 ‘지레대식 치차감속기’³³⁾는 종전의 1단 원통 치차감속기의 주동치차를 지렛대로 전환하고 지점치차를 더 설치하여 지점과 부하점 사이의 거리를 줄여 감속비를 높이면서 자체 제동 특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그 거리를 조종하여 무단감속을 실현한 것으로서 북한 국적의 3인에 의해 발명되었다. 출원 후 2010년 10월 1일에 등록되어 권리를 행사하다 등록료 불납으로 인해 2018년 7월 12일 소멸 등록되었다.

같은 시기에 출원된 ‘볼췘기식 감속기’³⁴⁾는 췘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주동축과 종동축, 끝면에 제1췘기윤곽이 형성된 주동원통, 제2췘기윤곽이 끝면에 형성된 종동원통, 그 사이에 배치된 여러 개의 볼들, 주동축에 평행으로 여러 개의 반원모양의 안내 홈들이 내면에 형성된 안내 슬리브로 구성되어 있는 감속기로, 2010년 10월 1일에 등록된 이후 등록료 불납으로 인해 2018년 7월 12일 소멸 등록되었다.

한편, 특허와 달리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북한 국적의 자가 남한 내에 직접 출원하거나 국제 출원 방식을 통해 출원한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국적의 자가 남한의 특허권을 포함해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2) 본 발명은 금이 물에 용해된 금 수용액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얻어진 금 수용액은 인체에 대한 금의 작용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금 수용액을 식품, 화장품, 음료 등에 첨가할 경우에 균일하고 안정된 미세 교질 금입자가 형성되므로 매우 유용한 첨가물로 이용될 수 있다(특허출원 제10-2003-0083197호).

33) 특허출원 제10-2008-7001540호(국제출원번호: PCT/KP2005/000005(2005. 12. 8.)), 우선권정보: 북한(KP)/KP-05-128(2005. 6. 20.)).

34) 특허출원 제10-2008-7001541호(국제출원번호: PCT/KP2005/000006(2005. 12. 8.)), 우선권정보: 북한(KP)/KP-05-129(2005. 6. 20.)).

4. 남한의 북한 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북한은 남한 국적자의 특허와 상표 출원을 거부해 오다 1995년부터 상표에 한해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인정해 왔다. 이에 중국, 홍콩 등 제3국의 법인을 통하여 태평양, 피죤, LG전자, 금강 등 143건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들 중 신세계, 초코파이, 신라면 등 35건의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2000년 초반 북한에서는 남한 국적자도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한에 특허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북한에 지식재산권을 직접 출원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한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2000년 초반과의 움직임과 달리 북한은 대부분 출원에 대한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인이 투자한 해외 기업 명으로 북한에 특허 출원을 하여도 후에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 보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표의 경우, 북한에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조항³⁵⁾을 근거로 남한 국적자에 대한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2016년에 개정된 상표법에서는 본 조항을 삭제³⁶⁾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국적자의 출원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발명법에는 상표법과 같이 북한에 비우호적인 나라나 지역의 특허 출원을 거부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국적자의 특허, 상표에 관한 단독 출원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과의 공동 출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³⁷⁾

한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북한은 특허협력조약(PCT)과 마드리드 시스템에 모두 가입하였기에 국제 출원을 통한 상호 출원이 가능하나, 북한의 남한 국적자에 대한 출원 불인정 정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한 국적을 가진 자의 북한 내 지식재산권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09~2018년 사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남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 출원한 63건의 경우 단 1건도 등록되지 못한 상황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35) 2012. 11. 13., 상표법 제21조 제10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 수정보충).

36) 북한 상표법 제21조(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표식, 표기)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 ①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 ② 국호나 그 약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 ③ 북한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표식
- ④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 내용을 담은 표식
- ⑤ 상품의 이름, 조성, 특성 같은 것만의 표기
- ⑥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숫자, 기하학적 표식
- ⑦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 ⑧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었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표식
- ⑨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 ⑩ **우리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삭제)**

37) 상표 출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제21조 제10호에 의한 사유로 우리나라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알려진 상표 출원 거절 사유에 따르면 '북남경제협력법의 소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 발명공보를 통한 북한 내 발명·특허 등록 동향

1. 개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출원·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특허 등록 현황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등록된 모든 발명특허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총국에서 매월 발행하는 발명공보를 통해 일부의 현황이 공개되고 있다.

북한 발명총국에서 발행하는 발명공보는 부정기적으로 공개되던 것이 2009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국회도서관과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³⁸⁾ 발명공보를 통해 조사한 2009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북한 내 발명 및 특허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15 | 북한 내 발명 및 특허 등록 현황

연도	발명권	특허권	총계
2009	2,588	10	2,598
2010	1,479	70	1,549
2011	1,500	36	1,536
2012	1,223	50	1,273
2013	1,108	144	1,252
2014	1,188	76	1,264
2015	1,358	67	1,425
2016	1,502	149	1,651
2017	1,065	59	1,124
2018	1,013	133	1,146
2019(10월까지)	1,093	120	1,213
합계	15,117	914	16,031

북한의 발명 및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1,457건의 등록이 있었으며 발명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2,598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감소세를 보인다 2015년과 2016년에 큰 폭으로 등록건수가 상승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한 등록건수는 2019년에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1,21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허권은 2012년까지 100건 미만의 등록건수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발명권보다 높

38) 이찬호,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동서독 사례와 남북한 협력 방안”,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7면.

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모든 연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월별 발명·특허 등록 현황, 산업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2. 북한의 발명·특허 등록 동향

(1) 월별 발명 및 특허 등록 현황

2019년 기준 북한의 발명과 특허에 대한 등록건수는 발명 1,093건과 특허 120건으로 전체는 1,213건이다. 전체 건수 중 발명이 90.1%를 차지하고 있어 특허권자에게 그 발명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보다는 발명의 실시권이 발명권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주민과 기관, 사업소 등은 주로 발명권을 이용하고, 1986년부터 북한 주민에게도 특허권의 취득이 허용되고 있지만 특허권은 주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³⁹⁾ 실제 조사해 본 결과 특허권 중 외국인의 등록은 1건이었으며, 나머지 199건은 모두 북한 기업과 내국인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북한 주민은 개별적으로 기업경영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소유하더라도 특허권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추정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과거보다 개인 기업의 운영이 보다 가능해져서 북한 주민도 과거보다는 많이 개인 기업의 권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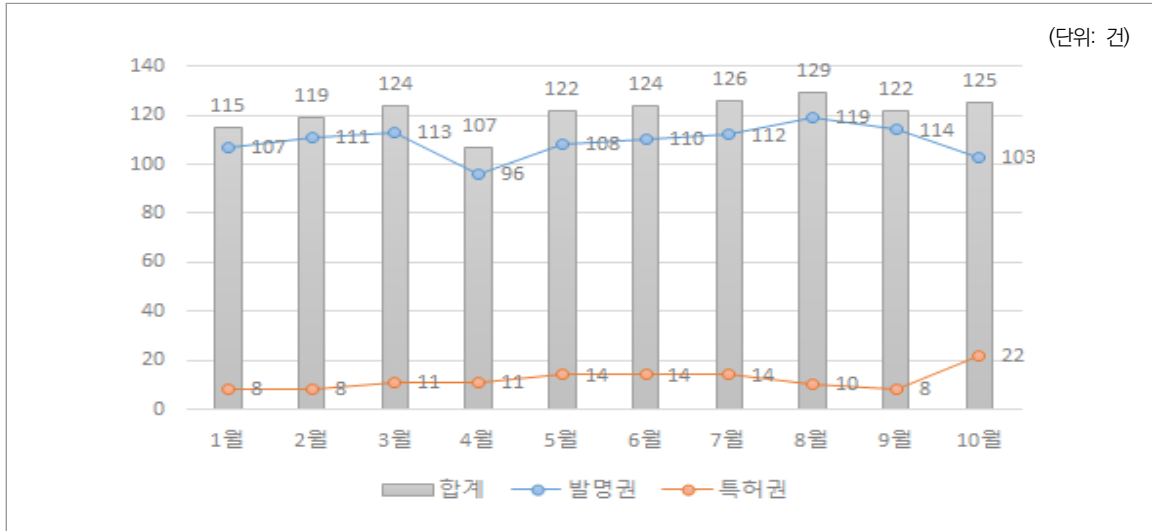
▼ 표 16 | 월별 발명 및 특허 등록건수

월별	발명권		특허권		발명&특허	실용기술	합계
	발명	실용기술	특허	실용기술			
1월	17	90	0	8	17	98	115
2월	39	72	1	7	40	79	119
3월	5	108	0	11	5	119	124
4월	15	81	3	8	18	89	107
5월	22	86	1	13	23	99	122
6월	14	96	0	14	14	110	124
7월	18	94	0	14	18	108	126
8월	5	114	0	10	5	124	129
9월	16	98	2	6	18	104	122
10월	14	89	2	20	16	109	125
합계	165	928	9	111	174	1,039	1,213

39) 신지연 외,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방안」, 특허청, 2008, 14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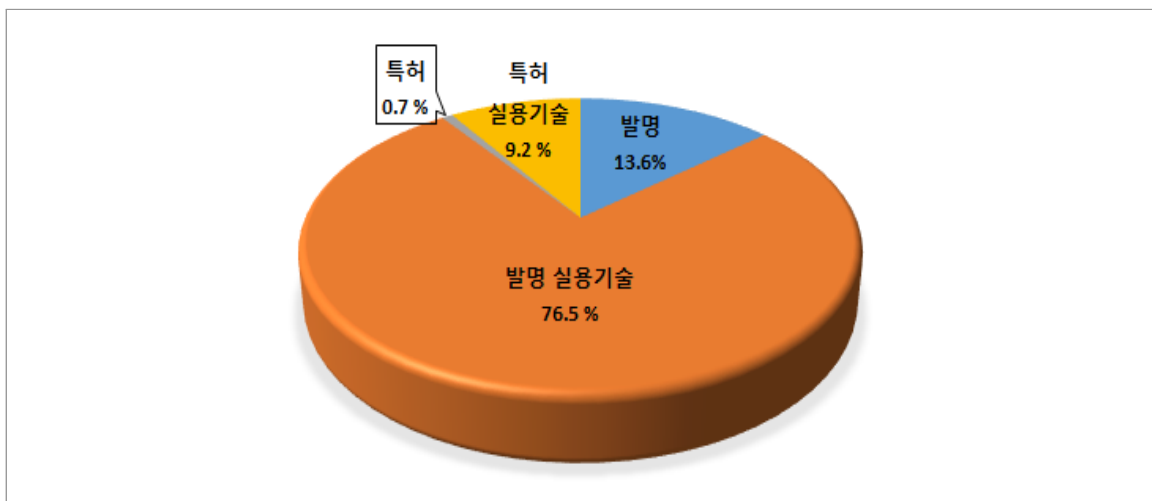
발명 및 특허 등록을 월별 현황을 보면, 발명권은 월 평균 109건으로 4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등록 현황을 보였다. 특허권은 10월에 특히 많이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4 | 발명 및 특허 등록 월별 현황



한편, 지식재산권의 권리별 등록 분포를 살펴보면, 실용기술은 1,039건으로 발명과 특허 174건보다 약 6배 정도 많이 등록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는 주로 고도의 기술인 발명 또는 특허 보다는 실용적 기술 고안인 실용기술의 개발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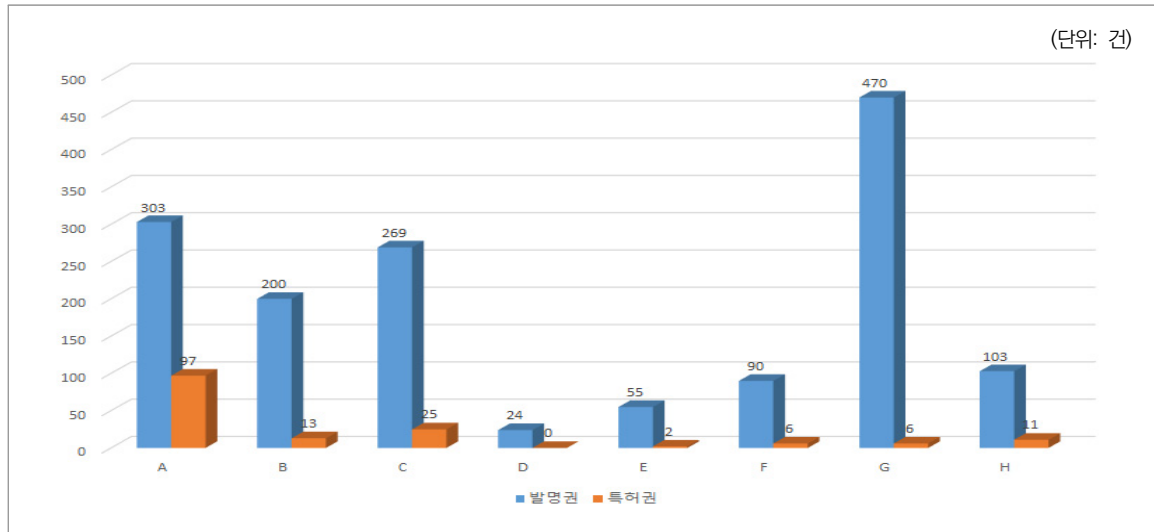
▼ 그림 5 | 북한 지식재산권의 권리별 등록 분포도



(2) 산업 분야별 등록 현황

발명공보에서 공시된 북한 내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 그림 6 | IPC 코드 분류별 등록 현황



* A: 생활필수품, B: 처리조작:운수, C: 화학:아금, D: 섬유:지류, E: 고정구조물, F: 기계공학:조명:가열:무기:폭파, G: 물리학, H: 전기

북한에서는 ‘비저항 및 분극률측정체계’, ‘저항법과 과도법에 의한 비저항측정장치’ 등 물리학 분야(G분류) 관련 등록이 476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금, 중조에 의한 감자의 잠깨우기방법’, ‘창성이깔나무의 모마름병막기방법’ 등 생활필수품 분야(A분류)가 400건(23.9%)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섬유, 지류 분야(D분류)와 고정구조물 분야(E분류)는 각각 60건도 안 되는 등록건수로 조사되었다. 한편, 발명권은 전체 등록건수와 마찬가지로 물리학 분야(G분류) 470건(31.0%)과 생활필수품 분야(A분류) 303건(20.0%)으로 많은 등록이 이루어졌으나, 특허권의 경우에는 생활필수품 분야(A분류)가 60.6%로 압도적으로 많이 등록되었으며, 물리학 분야(G분류)는 3.8%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특허청에서 공개하는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에 따른 산업 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0) 발명공보에 공시된 발명권·특허권의 복수 지정된 IPC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함.

▼ 표 17 | 산업 분야별 등록 현황

산업 분야	발명권	특허권	전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9	73	21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01	2	1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95	0	95
특수 기계 제조업	87	4	91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	69	5	7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2	1	73
의료용 기기 제조업	53	2	55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46	3	49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39	8	47
식료품 제조업	15	14	2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2	6	28
1차 철강 제조업	26	1	2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2	2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0	3	23
전자부품 제조업	14	4	18
건설업, 건축기술 서비스	15	1	16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14	2	16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4	1	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11	4	15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	1	1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14	0	14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증기발생기 제조업	10	3	13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13	0	13
기타 제품 제조업	11	1	12
광업	11	0	11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7	3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2	10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9	0	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	0	9
전기, 가스, 증기, 수로	9	0	9
1차 비철금속 제조업	7	1	8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5	2	7
비료 및 질소 화학물 제조업	4	2	6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0	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5	0	5
자동차 제조업	5	0	5
가정용 기기 제조업	4	0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2	4

산업 분야	발명권	특허권	전체
담배 제조업	2	2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0	4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2	2	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0	4
일반기계 제조업	4	0	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	1	4
음료 제조업	3	0	3
농림어업	1	1	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	0	2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	0	2
철도장비 제조업	2	0	2
항공기 제조업	1	1	2
화학섬유 제조업	2	0	2
금속주조업	1	0	1
반도체 제조업	1	0	1
선박 제조업	1	0	1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1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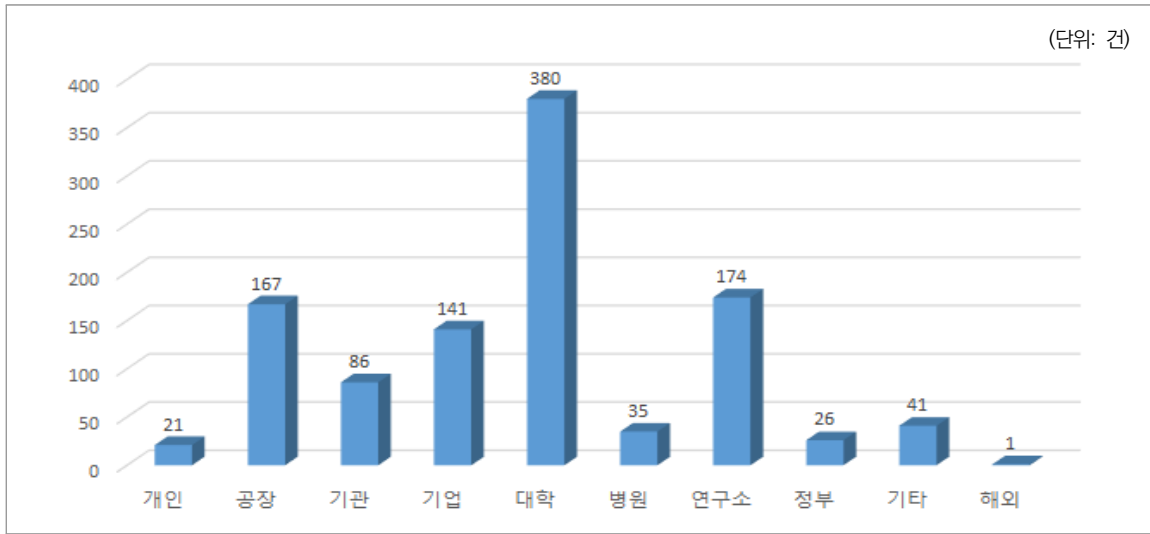
가장 많이 등록된 산업 분야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2건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03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95건, ‘특수 기계 제조업’ 91건 등의 분야에서 많이 등록되었다. 반면, ‘반도체 제조업’, ‘선박 제조업’, ‘금속주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에서는 1건, ‘항공기 제조업’, ‘농림어업’, ‘철도장비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등에서는 2건으로 등록이 낮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지식재산권은 의료 관련 기술(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무기 관련 기술(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 분야에 41%의 높은 비중으로 등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간산업 분야(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선박 제조업 등)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발명권은 전체의 비율과 유사한 등록 비율을 보이는 반면, 특허권은 발명권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는 등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특허권 등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출원인별 현황

북한 내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출원인을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7 | 출원인 형태별 등록 현황



북한의 지식재산권 출원인을 살펴보면, 대학이 380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연구소가 174건, 공장이 167건, 기업이 141건으로 많은 출원인 형태를 나타내어 4개의 형태가 전체의 80.4%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기간에 해외 출원인은 단 1건만을 기록하였다.

▼ 표 18 | 출원인 형태별 발명권 및 특허권 건수

	개인	공장	기관	기업	대학	병원	연구소	정부	기타	해외
발명권	1	153	73	117	367	31	158	23	40	0
특허권	20	14	13	24	13	4	16	3	1	1

발명권에서는 대학(367건), 연구소(158건), 공장(153건), 기업(117건), 기관(73건)의 출원인 비중이 높은 반면, 개인(1건)과 해외(0건)의 출원인 비중은 낮았다. 특허권에서도 기업(24건), 개인(20건), 연구소(16건), 공장(14건)의 출원인 비중이 높았다. 개인과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발명권 대신 특허권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명의 실시권이 발명권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보다는 발명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직접 가질 수 있는 특허권에 출원함으로써 개인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기회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대학의 경우에는 특허권보다 발명권의 비중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출원인 형태인 대학의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이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33건, '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이 32건,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의 경우에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27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 15건, '측정, 시험, 향해, 제

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4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12건, '특수 기계 제조업' 12건,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1건 순으로 많은 등록을 하였다. 공장의 경우에는 '특수 기계 제조업' 23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건,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16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4건 순으로 기계 제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형태별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과 연구소, 공장의 각각의 상위 5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표 19 | 대학, 연구소, 공장별 출원인 상위 기관

순위	대학	건수	연구소	건수	공장	건수
1	김일성종합대학	84	국가과학원	91	김정숙평양방직공장	8
2	김책공업종합대학	68	의학연구원	19	평양화장품공장	8
3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24	국가영화총국 영화과학연구소	5	단천마그네사공장	4
4	평양건축종합대학	17	체육연구원	3	선홍식료공장	4
5	평양종합대학	16	평안북도전자업무연구소	3	평양맥주공장	4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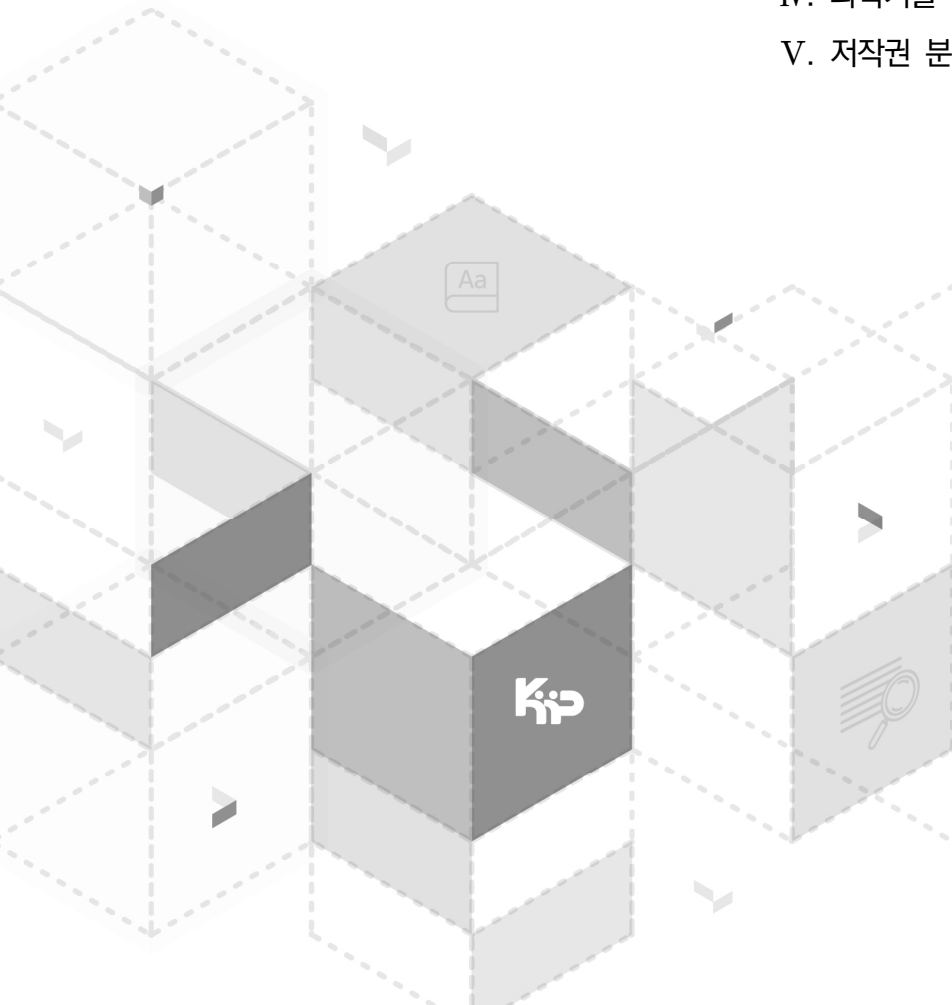
북한의 발명공보를 살펴보면, 등록건수가 월등하게 높은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 발명권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특허권은 발명권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북한에서도 과거에 비해 개인 기업의 권리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출원을 많이 한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국가기관과 대학에서는 발명의 실시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개인은 대부분 특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발명 또는 특허보다는 대부분 실용기술의 개발에 치중되어 있어 기술의 고도성보다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고안하여 만드는 것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기간의 건설, 보건의료 관련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정과제를 기존의 경제건설에서 위생방역 시설 확충과 관련 사업 및 보건의료 사업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 북한의 무너진 방역 및 보건의료체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⁴¹⁾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의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분야에서 발명권과 특허권의 등록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41) 최은주, "북한의 보건의료체도와 남북 교류협력", 「세종정책브리프」 2020-07호, 세종연구소, 2020, 1면.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

- I.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
- II.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 III. 법·제도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
- IV.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
- V. 저작권 분야의 교류협력



I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

1.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선언⁴²⁾과 6. 1.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였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양 정상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 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하여 남북은 6. 26.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는 2008년 1월 29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남북 간 철도 분야 회담이었다. 본 회담에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남북은 철도협력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의 동시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선행 사업으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 경의선부터 시작하여 이어서 동해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7월 중순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문산-개성)을,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와 설계, 공사방법 등의 실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공식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하였다. 6. 26. 남북철도협력 분과 회담에서 합의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26.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⁴³⁾

남과 북은 2018년 6월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와 활용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서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 남북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하였다.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에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동해선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42)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을 함께 발표하였다.

3. 남과 북은 우선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문산-개성),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추진하는 데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실제 정부는 7월 20일 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제진-금강산)과 7월 24일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문산-개성)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7월 24일과 8월 9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연구조사단 회의를 진행하였고, 공동연구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 등에 관하여 상세히 논의하였다.

10월 15일에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는데, 본 회담에서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는 착공식의 조속한 개최 계획 정도에만 합의했던 6. 26. 남북철도협력 분과 회담에서 더 나아가 그 시기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착공식의 개최를 위하여 10월 말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실제 정부는 미국·유엔 등과 협의하여 철도 현지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고, 11월 30일~12월 5일 약 6일간 경의선의 개성-신의주 구간을, 12월 8~17일 10일간 동해선의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현지조사 하였다.⁴⁴⁾

〈10. 15.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⁴⁵⁾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43) 통일부, 「2019 통일백서」, 통일부, 2019, 89면.

44) 통일부, 「2019 통일백서」, 통일부, 2019, 129면.

45) 통일부, 「2019 통일백서」, 통일부, 2019, 77면.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으로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도로'의 경우 남북은 6. 28.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또한 2008년 2월 12일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남북 도로 분야 회담이었다. 본 회담에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의 의의 및 추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의 경우 고성-원산, 경의선의 경우 개성-평양으로 정하고 향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현대화 수준과 공사범위는 도로의 제반 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설계 및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철도 분야와 마찬가지로 도로 연결·현대화를 위하여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8월 초 경의선을 시작으로 동해선까지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6. 28.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의 구체적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8.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⁴⁶⁾

남과 북은 2018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①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 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한다.
- ④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당면하여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생하기로 하였다.
 - ①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한다.
 - ② 현지 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실제 8월 13~20일 경의선 도로(개성-평양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8월 20일과 11월 12일에는 남북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회의를 진행하였고, 공동연구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 도로 현지 공동조사 등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12월 21~23일에는 동해선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24일은 경의선 현지 공동조사 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12월 26일 남북은 북한의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본 착공식에 남한은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에서는 각 100명의 인사가 참석하였고, 해외에서는 UNESCAP 사무총장 등 8명이 참석하였다.

2019년 초 정부는 이러한 2018년의 성과들을 이어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북한에 실무접촉을 제안하였다. 철도의 경우, 2월 25일 남북이 양측의 철도자료를 상호 교환하였다.⁴⁷⁾ 우리 측은 2018년 말 진행한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은 ‘개성~신의주 및 금강산~두만강 철길 관련 종합자료’ 2건을 제공하였다. 북한 측 자료에는 역구내 배선도, 구조물의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남북철도 연결·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참고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6월 4~7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47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급 회의’에 정회원국으로서 참여하였다. 본 회의의 참석은 2023년 ‘제51차 장관급 회의’의 개최를 유치하는 등 국제철도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로의 경우, 정부는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 현지조사에 대

46) 통일부, 「2019 통일백서」, 통일부, 2019, 92면.

47) 통일부, 「2020 통일백서」, 통일부, 2020, 64면.

하여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남북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즉시 현지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놓은 것이다. 또한, 1월 31일 남북 간 실무접촉을 가졌고, 2월 25일에는 도로의 설계·시공 기준 등의 북한 측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며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준비를 지속 중이다.

2.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및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12월 말까지 공동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2018. 9. 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⁴⁸⁾

1.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 ① 무력충돌 방지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 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 ③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 ④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의 작전수행절차 적용
 - ⑤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연락체계 가동
2.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강구
 - ① 상호 1km 이내 남북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 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 ③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진행
 - ④ 비무장지대 내 역사유적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 합의
3.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
 - ① 2004년 6월 4일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 재확인 및 전면적 복원·이행
 - ② 서해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 ③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출입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
 - ④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 불법어로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남북 공동순찰 방안 마련
4.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 ①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 ②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 ③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
 - ④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 ①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 협의
 -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 협의
 - ③ 남북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 및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또한, 이어 10월 26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추진일정을 구체화했다.

〈2018. 10. 26.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⁴⁹⁾

남과 북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2. 남과 북은 금년 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한 상호 11개 GP 철수를 위해 11월 말까지 GP 병력·장비 철수 및 안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로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 10명)을 구성하여, 11월 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이 한강의 공동 수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강하구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의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수역이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수역이기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 약 60여 년간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남북 모두의 출입이 금지됐던 구역이다. 민간선박의 항행이 제한되어 왔고, 수로측량과 같은 기초조사나 항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

이에 2018년 11월 5일~12월 9일 남북공동조사단은 군 관계자와 수로 전문가 등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하고, 6척의 선박으로 공동이용수역 약 70km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였다. 음향을 이용해서 선박과 강바닥 간의 깊이를 측정하고, 조석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작업이다. 그 결과, 암초 21개

48) 통일부, 「2019 통일백서」, 통일부, 2019, 83면.

49) 통일부, 「2019 통일백서」, 통일부, 2019, 85면.

와 대형사주 5개를 발견하는 등 수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공동수로조사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왔던 구역을 교류협력의 기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후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정부는 2018년에 실시한 공동수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 및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나, 3월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며 후속적인 실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범항해 또한 실시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향후 민간선박의 시범항해와 자유항행 등을 보장하고 한강하구 공동이용 종합계획 수립 등을 북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3. 금강산 관광

남북은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2018. 9. 평양공동선언〉⁵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화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19년 2월 8일 금강산에서 현대아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2월 12~13일에는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개최하는 등 민간의 금강산 지역 방문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7월 3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최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 기업인 대상으로 '남북 경험기업 간담회' 및 개별 면담 등을 열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3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50) 통일부, 「2019 통일백서」, 통일부, 2019, 64면.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지시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10월 25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 관광 시설물 철거를 문서교환의 방식으로 협의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 간 합의 원칙하에서 금강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양측 간 실무회담 개최, 공동점검단의 방북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10월 28일에는 현대아산·한국관광공사 사장과, 11월 14일에는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11월 15일 금강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금강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1월 17~24일에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나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역사,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국제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II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1.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정부는 2007년부터 고려 궁성 유적을 남북이 공동발굴조사를 하여 민족공동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남북 주민 간에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간에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본 사업은 잠시 진행이 중지되었다가, 2018년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재개되었다.

2018년 7월과 9월 남북은 북경과 개성에 실무협의를 열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심건축군 축대 구간 등을 공동발굴하였다. 그 결과 고려 궁성의 배치를 확인하였고, 기와·도자기 등의 유물을 출토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남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성 만월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물·유구 등의 자료를 국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실제 2018년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60여 만 점의 유물자료 중 26만여 점을 디지털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2월 9일~3월 18일 동안 평창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세계에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북 간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함으로 방문객이 5만여 명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다시 공동발굴조사 작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2019년은 고려 황궁 개성 만월대 창건 1,100주년의 해임에 따라 지난 12년간 남북이 공동 발굴한 성과를 모아 덕수궁 선원전 터에서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이라는 이름의 고려 황궁 개성 만월대 디지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다.⁵¹⁾ 2005년도 남북은 1900년대 이후 남북 및 해외에서 사용하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사전으로 편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올림말분과, 집필분과, 새 어휘분과, 정보화분과로 나누어 현재까지 총 25차례의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였다.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올림말 약 30만 7천여 개를 선별 완료하였으며, 선별된 올림말은 2009년부터 집필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 남북 집필원고 12만 5천여 개 단어를 1차적으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2016년 이후 2018년 말까지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중단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북 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표제어를 대상으로 교정과 교열 작업을 수행하였고, 말뭉치 정리, 삽화 그리기 등을 추진하며 2019년 말까지 약 78.7%의 진척률을 달성했다.⁵²⁾

2018년 12월 24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개정으로 2019년 4월 26일자로 종료 예정이었던 본 사업은 3년 연장이 되었다. 이에 2019년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한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편찬 성과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11월 26일에는 ‘겨레말사전 홍보관’을 오픈하였고, 국민들이 남북의 어휘 차이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남북 어휘 의미·용어법’, ‘남북 생활용어2’, ‘남북 어휘 표기 차이’ 등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3.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북한 참가

2018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참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남북은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1월 15일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1월 17일 평창올림픽 참가 실무회담 등 3차례의 남북회담을 진행하였고, 1월 20일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남북 간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 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북한응원단 파견, 북한예술단 공연, 북한태권도시범단 공연,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장웅 IOC 위원, 김일국 체육상 등 북한 체육계 고위인사를 포함하여 선

51)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https://www.gyeoremal.or.kr>).

52) 통일부, 「2020 통일백서」, 통일부, 2020, 71면.

수단 46명, 응원단 229명, 예술단 137명, 태권도 시범단 31명, 기자단 21명 등을 포함하여 총 470명의 방문단을 파견했다. 또한 개회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단 총 22명을 파견하였고, 폐막식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남북은 개막식 공동입장 시 및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단기로 한반도기를 사용하였고, 호칭은 코리아(KOREA, 약어 COR)를 사용하였으며, 단가는 아리랑으로 하였다.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경우, 그 구성은 기존의 한국 여자아이스하키팀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월 25일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남한으로 입경하였고, 진천선수촌에서 우리 여자아이스하키팀과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응원단은 2월 8일 북한선수단 입촌식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하였고, 북한선수단의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선수단의 경기에도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응원을 펼쳤다. 이 밖에도 강릉, 평창에서의 거리공연도 진행하였으며, 인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내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3월 9~18일 동안 진행된 평창패럴림픽에도 20명의 북한 선수단과 4명의 북한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 관계자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경하였으며, 북한의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로부터 특별 출전권을 받아 평창패럴림픽에 참가하게 되었다.

4. 하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출전 및 공동 개최 추진

남북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2019년 2월 1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남북 - IOC 3자 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3자는 2020 도쿄하계 올림픽에서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과 2032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유치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본 회의에서 남북은 양측이 여자 농구, 여자 필드하키, 유도 혼성단체전 및 조정의 총 4개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것과 2032 하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는 의향을 IOC 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3월 7일 IOC 집행위원회는 2020 도쿄하계 올림픽에서의 남북단일팀을 승인하였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남북의 의견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후속 협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중 문재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며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의 공동 개최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추진’이 신규 국정과제 실천과제로 선정되었다. 특히 2019년 11월 26일에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이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대한체육회의 공동 주최하에 개최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남북 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방향 및 비전을 논의하였으며, 체육·교통·환경·경제 등의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III 법·제도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강화

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 수립 배경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31호, 2018. 3. 13., 일부개정)」에 따라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한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또한,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4항).

(2)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018년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었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3~2017)’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정책 기조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된 남북관계 및 정세를 바탕으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3회의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 등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2018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14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8월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계획(안)을 심의하였고,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정하여 12월 8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0 |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비전	평화 공존, 공동 번영
3대 목표	1.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2.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3.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1. 단계적·포괄적 접근 2.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3.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1.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2.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3.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4.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5.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7대 중점 추진과제	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2.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3.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5.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6.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3)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2019년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2차 연도 계획인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시행계획은 2019년 1월부터 2월 동안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총 39개의 중앙행정기관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계획(안)이 도출되었다. 이후 2월 22~28일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서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3월 11~18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3월 27일 그 내용이 확정되었고 4월 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

2019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정한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16개의 세부과제를 두고 있다. 2019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조사 등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하여 국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화통일에 대하여 대내외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1 |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7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1.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2. 남북대화	2-1. 남북대화 정례화·상시화
	2-2.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3. 남북 교류협력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기반 확충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4-2. 남북경협 준비
5. 인도적 협력	5-1.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5-2.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
	5-3.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2. 통일법제 구축

정부는 남북의 통일 과정 또는 통일 후 통합 과정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12일 정부는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된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위촉하며, 통일법제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통일법제추진위원회는 총 4회(1월 24일, 5월 12일, 9월 5일, 11월 22일)에 걸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통일법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 및 수렴하였다. 12월 13일에는 법무부·법제처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본 행사를 통해 유관부처 간 통일법제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통일법제 정비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상호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통일법제의 신진전문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2018년 10월 11일에는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최하며 신진연구자와 기존 전문가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어 2019년 11월 14일에도 해당 세미나를 개최하며 신진연구자들이 ‘남북한 법률체계의 비교 및 남북한 현안 관련 법률의 비교’에 대한 쟁점을 발표 및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 및 ‘통일법정책연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통일법제 관련 연구 및 논의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IV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

1.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체결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와 1992년 9월 17일 체결된 ‘부속합의서’의 제2조에 남북한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3.)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부속합의서(1992. 9. 17.)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 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1990년 초기 해외동포 중재를 통한 간접협력

초기 협력은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해외동포의 중개교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개되었다. 주로 남북한-해외동포가 연합하여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형식이었다. 재중동포 중재로 1990년에는 북경에서 현대물리학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991년에는 연길에서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중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 대규모 인원을 대표단으로 구성하여 참석해 화제가 되었다. 그 후에는 우리말정보처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남북한-해외동포의 공동 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들 학술행사들은 주로 남북 양측에 연계되어있는 연변대학교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등의 중재 활약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등으로 남북대화는 단절

되기 시작하였고, 해외동포 중재를 통해 이루어지던 남북 학술행사도 중단되거나 소규모로 축소되었다.⁵³⁾

3. 1990년 후반 공동연구 등 남북 교류의 확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다. 특히 북측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취임하며 과학기술을 포함한 강성대국 전략이 추진되면서 남북 과학기술자들의 직접적인 접촉과 공동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남북 최초의 공동연구는 경북대학교 김순권 교수와 북한 농업과학원의 협력으로 추진한 ‘북한 적응형 옥수수 공동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개발한 척박토양 적응형 옥수수 품종을 유사한 토양의 북한에 적용한 것이었다.⁵⁴⁾ 남북 공동연구는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 차원에서 비료, 감자, 농약 등의 연관 분야로 확대되었다. 남북 공동연구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는 기술지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자단체총연합회가 각 학회와 함께 북한의 분야별 과학기술 현황을 조사하고, 연차별로 물리학 등 13개 분야의 남북 과학기술 용어 비교작업을 실시한 CD 타이틀을 발간하였다.

4. 2000년대 초반 정책 연구와 조사 연구의 확대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2000년대 초반 그 규모가 확대되고 상당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북한 공동연구가 성사되면서 과학기술부는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과 교류협력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0년 과학기술부는 국제협력사업 안에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였고, 다양한 남북한 교류협력과제들과 몇 가지 정책연구 및 조사연구를 편성하였다. 다만, 주로 농업 분야에서만 추진되었고, 북한의 과학기술 주무부서인 과학원과의 협력은 전무했다는 한계가 있다.⁵⁵⁾ 과학기술부 주관의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은 그 관리기관이 과학기술부 직속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으로 수차례 변화하면서 큰 파동을 겪기도 했다. 사업 예산도 2000년대 초반에는 연간 약 10억 원까지 확대되었으나,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5억 원으로까지 감축되기도 하였다.

53) 이춘근 외,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19면.

54) 이춘근 외,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19면.

55) 이춘근 외,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20면.

2008년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합병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구 과학기술부의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남북학술교류지원사업'이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으로 통합되었다.

대학과 출연(연)들도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주체였다. KISTI는 북한 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고자 북한 과학기술정보 웹사이트인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고, STEPI의 경우 남북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5. 민간 기업의 남북 ICT 협력 추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학과 출연(연)의 남북 과학기술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협력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의 협력은 남북경협과 동시에 ICT 영역의 교류로도 인정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삼성이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북경을 거점으로 북한 조선컴퓨터센터(KCC)와 협력하여 IT 인력 양성과 S/W 개발을 수행해왔다. 이외에도 하나비즈, SK, KT, 고려정보기술센터, 훈넷, IMRI 등이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였으며, NGO인 월드비전이 인공씨감자 지원사업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⁵⁶⁾

6. 최근 출연(연) 남북협력 추진 사례

한국천문연구원은 2015년 천문 분야의 남북협력 3개 과제를 제안하고 남북천문 분야 활성화 및 협력 방안 연구 기획과제를 수행하였다. 남북협력연구를 위해 중국, 네덜란드, 몽골 연구자와 협력체계를 구성하였고, 중국과학원 등을 통해 북한의 평양천문대와의 교류를 추진 중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반도 광물자원개발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광물자원기술연구팀, 전략광물활용기술연구팀, 금속소재기술연구팀을 구성하여 북한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기술 확보와 북한 전략광물자원의 선광 및 제련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북방지질자원전략센터를 두어 남북 및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 중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북한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한반도 풍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발해만 NLL 해상풍력단지 및 부유식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나진, 선봉 해역의 풍력발전 등에 대해 연구 중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기술을 개발하여 북한의

56) 이춘근 외,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20면.

주된 운송수단인 철도를 현대화하여 대륙철도망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남북한 철도, 건설용어 비교사전 발간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2015년 중국 연구과기대를 통해 북한 국가과학원 측 화학 분야 수요 기술 7개를 발굴하였고 '남북한 화학기술 및 화학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북한과 협력할 후보과제 21개를 도출하였다. 2017년 12월, 중국 연변에서 북한의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과학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를 진행했다. 2019년 8월에도 중국 연변에서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등의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 성격의 협력 교류가 있었다. 이는 재중동포(중국 조선족,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소속)의 중개로 이뤄졌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1990년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현황조사, 2000년대 인공씨감자 대량증식기술, 한반도 자생식물 활용사업, 우량 옥수수 품종 현지적응 시험과 산림해충 방제와 제약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와도 연계하여 남북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북한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www.nktech.net)를 구축, 운영했다. 남북 과학기술 용어 비교 및 백두산의 자연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최초로 특수자료실을 운영해 왔고,⁵⁷⁾ 남북 과학기술 용어 비교 조사와 함께, 북한의 과학기술전당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2020년 8월 중국 장춘에서 중국 CNKI가 주관하는 국제학술행사는 'CDPDL 2019'에 KISTI 및 KISDI, ETRI, KIGAM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북한의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전당 등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과 함께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행사는 CNKI의 초청 및 중개로 주로 이뤄졌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19년 7월에 중국 연변에서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량계측 분야의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국과학원 계량계측연구소의 중개로 지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자체 연구 또는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남북협력 및 북한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다. 양 기관은 코로나19라는 환경하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 특히, 해당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비교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57)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특수자료 공간 설치를 추진함.

7.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계획 수립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는 정부가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이 포함된 중장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서는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본 기본법은 2001년 제정 후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여전히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가 여러 차례 개편되면서 실질적인 추진 방식과 연속성이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남북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다.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7조〉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 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4. 5. 28.>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 16., 2019. 8. 27.>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9조〉

-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2. 4.]

(1) 과학기술부의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기본계획(2003. 12.)

첫 번째 남북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과학기술부의 조사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한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기본계획(초안)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통일부 등의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쳐 2003년 12월 정부(안)으로 채택되었다. 최종 정부(안)의 경우 비공개 처리되므로, 이하의 내용은 당시 기본계획(초안)을 수립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내용⁵⁸⁾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협력 목표는 ①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제의 체계적 확대 및 내실화, ②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 남북 경제협력과의 연계 강화, ③ 국내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정비의 3가지였다. 협력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부 정책이 반영되었다.

58) 이춘근 외,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39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 말까지 남북협력연구는 해외 동포의 증재를 통해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공동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되고, 그 분야도 농업 등으로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북한 과학기술 주관부서인 국가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등 남북 과학기술 협력 연구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협력 목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협력과제를 보다 체계화, 내실화하고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협력 목표에는 정부의 대북정책도 반영되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남북협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몽골, 북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두만강개발 프로젝트와 나진, 선봉 특구 진출의 추진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동북아 정책과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북한 과학기술과 관련한 전문가와 자료, 협력 창구가 극히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남북협력창구를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내 대북한 과학기술 협력체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해내는 것을 세 번째 협력 목표로 두었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①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및 장관급회담 추진, ② 남북한 공동수요 창출 및 협력과제 확대, ③ 인력교류 확대와 학술대회 개최, ④ 경제협력, 특구와 연동된 과학기술협력 추진, ⑤ 협력과제의 유형화와 단계별 추진, ⑥ 국내 관련부서 협력체제 구축 및 예산 확충, ⑦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의 연계 등이었다.

역시 남북한 공동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제와 인적 교류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당시 북한 국가과학원에서 제안한 ‘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을 추진 과제로 설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인다. 협력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2 |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기본계획(초안)(2003)의 목표 및 과제

구분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제의 체계적 확대 및 내실화 ○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 남북 경제협력과의 연계 강화 ○ 국내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정비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및 장관급회담 추진 2. 남북한 공동수요 창출 및 협력과제 확대 3. 인력교류 확대와 학술대회 개최 4. 경제협력, 특구와 연동된 과학기술협력 추진 5. 협력과제의 유형화와 단계별 추진 6. 국내 관련부서 협력체제 구축 및 예산 확대 7.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의 연계

(2) 교육과학기술부의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기본계획(2009)

2008년 이명박 정부에는 남북의 관계가 크게 변화했다. 우리는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했다. 이에 남북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과학기술을 포함한 남북협력사업도 축소되었다.

남북한의 정부조직도 개편되었다. 우리는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였고, 이에 따라 구 과학기술부의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교육부의 학술협력사업이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으로 통합되었다.

북한의 경우, 국가과학원에 통합되어 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따로 독립하면서 협력창구였던 국가과학원 2국(해외동포협력국, 민족과학기술협회 사무국)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전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전에 국가과학원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기에 북한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큰 어려움이 발생하진 않았다.

반면, 우리는 이질적인 두 집단이 통합되면서 남북협력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초래됐다. 예를 들어, 구 과학기술부의 연구과제 관리기관인 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교육부 산하기관인 학술진흥재단을 합병해 한국연구재단이 출범되면서 남북 과제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다. 양 기관이 과제 관리를 위해 구축하고 있던 전산행정 시스템과 예산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 대북정책과 상통하는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제2차 남북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과 학술이 통합되어 관리되었으므로, 기본계획의 명칭은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이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사업을 위탁받아 초안을 수립하였으며 정부가 조정한 최종안은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부분⁵⁹⁾만을 한정적으로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 목표는 ①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②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추진, ③ 대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추진체제 정비의 3가지이다. 2003년 제1차 기본계획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 상황을 반영했다.

당시 교육부가 가져온 과제들은 남북 공동세미나 개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본 과제들은 중단과 연기가 잦아지는 등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웠다. 이에 협력창구 보유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첫 번째 협력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 협력 목표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반영되었다. 비핵화를 전제로 '협력적 위협 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남북협력을 추진하

59) 이춘근 외,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44-49면.

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새롭게 개편된 조직의 전산행정과 대북사업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중점 추진과제는 ① 통합 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내실화, ② 국내 관련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충, ③ 남북 주무부서 간 대화창구와 협력거점 구축, ④ 북한 개발 및 인도적 지원과의 연계, ⑤ 대규모 교육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설립 및 추진, ⑥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공동체 형성, ⑦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제기구, 해외동포와의 협력 등이었다.

남북관계 악화로 협력 활동이 축소된 상황이었으므로 국내 사업 관리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체계적인 부처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편된 남북 주무부서 간의 협력창구를 개설하고 협력 프로그램의 규모를 대형화하며 과학기술협력센터와 같은 협력거점을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3 |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기본계획(초안)(2009)의 목표 및 과제

구분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추진 ○ 대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추진체제 정비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 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내실화 2. 국내 관련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충 3. 남북 주무부서 간 대화창구와 협력거점 구축 4. 북한 개발 및 인도적 지원과의 연계 5. 대규모 교육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설립 및 추진 6.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공동체 형성 7.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제기구, 해외동포와의 협력

(3) 미래창조과학부의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2015)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립 상태였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수립되며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강행되었고 국제적으로 대북제재 정책이 펼쳐졌다. 이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지속 사업도 중단되는 등 남북협력이 실질적으로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정부조직은 또다시 개편이 되었다.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 분야(교육부)가 분리되어지고 ICT 분야가 추가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다. 이에 구 교육과학기술부의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이 '과학기술 및 ICT 협력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사업 관리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모두 지원하는 형태를 갖췄다.

그러다 2014년 7월 통일준비위원회가 수립되면서 남북관계에 다소 변화가 생겨났다. 박근혜

정부는 각 부처 연합으로 인도적 지원 위주의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대박론’ 정책을 추진하고, 2014년 독일 드레스덴선언과 8·15 경축사 등을 통해 패키지형 남북협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면서 여전히 실질적 협력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에 수립한 제2차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기본계획은 부처 간 업무 조정 등의 문제까지 겹쳐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새로이 제3차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위탁받아 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해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계획(초안)’과 ‘ICT 교류협력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었다. 이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⁶⁰⁾

먼저, 협력 목표는 ① 정부의 대북정책과 당면 현안에 부응, ②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③ 협력기반 구축 및 통일 준비 추진체제 정비의 3가지였다. 당시 남북관계의 대립 상황을 반영해 소극적인 협력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자 통일 준비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점 추진과제의 경우 ① 과학기술 융·복합형 민생 분야 협력, ② 과학기술 주도형 협력과제 추진, ③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협력센터 설립, ④ 북한 특화산업 육성과 남북격차 해소, ⑤ 협력기반 구축 및 통일 준비의 5가지로 설정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4 |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2015)의 목표 및 과제

구분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북정책과 당면 현안에 부응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 협력기반 구축 및 통일 준비 추진체제 정비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 융·복합형 민생 분야 협력 2. 과학기술 주도형 협력과제 추진 3.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협력센터 설립 4. 북한 특화산업 육성과 남북격차 해소 5. 협력기반 구축 및 통일 준비

60) 이춘근 외,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49-52면.

V 저작권 분야의 교류협력

1. 월북 작가 작품의 해금과 저작권 분쟁

남북 간 저작권 보호 문제는 1988년 한국정부가 홍명희, 리기영, 백석 등의 월북 작가 작품에 대하여 해금 조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월북 작가의 작품들은 모두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다. 해금 이후, 우리 출판사들은 월북 작가의 작품들을 경쟁적으로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모두 불법 출판물에 해당했다. 대부분 북한 저작물을 중국을 통해 반입하여 이를 복제, 출판한 것이었고, 북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나 간행되었다. 저작권 교류가 중국 등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출판사는 저작권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저작권 교류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2.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체결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 당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남북한 당국은 이 합의서 제16조(“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를 통해 문화 교류를 약속하였다. 1992년 9월 27일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제9조 제5항을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방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며 상대방의 저작권 보호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실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이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평가받는다.

3. 판례를 통한 저작권 보호 기준 확립

무질서한 남북 저작권 교류 초기에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보호 기준을 확립했다. 첫째,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북한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⁶¹⁾ 이는 북한의 국제저작권협약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다.⁶²⁾ 둘째, 월북 저작자의 저작재

산권도 생존 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간 보호되고,⁶³⁾ 상속도 가능하다. 따라서 저작자 사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의 거주지역이 남한인지 북한인지에 관계없이 상속인으로 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거나 해당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⁶⁴⁾ 셋째, 북한의 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의 기관, 단체 등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⁶⁵⁾

4.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신설

2004년 5월 북한은 내각 산하에 저작권사무국을 신설하여 저작권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북한의 조선신보에 따르면 저작권사무국은 ‘국내의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장악,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⁶⁶⁾ 2003년 베른협약 가입 후, 저작권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저작권사무국을 발족했다.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 관련 사업을 국제적 수준에서 벌여나가기 위한 사업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었으며, 그동안 외국에서 북한의 출판물이 무단 복제되는 데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여 동 사무국을 통해 저작권 양도계약의 심의와 승인을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설립으로 인해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당사자는 물론 저작권 승계자와 관련된 문제, 북한에서 흔히 있는 공동 저작 또는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한 계약 주체의 문제를 해소하고 남북한이 합법적인 저작권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다.⁶⁷⁾

61)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주권 범위 내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우리 헌법 제3조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 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이상, 북한지역이 우리 주권의 범위 밖에 있거나 우리 법령의 적용 밖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북한 주민의 상속인이 남한에 있어 그에 대한 우리 법령상의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거주한 자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그가 사망함에 따라 남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저작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선고 89카13962 결정.

62)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북한이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우리 저작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 1994. 2. 14. 선고 93카합 2009 판결.

63) 남한의 경우,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사후 존속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64) “6.25 사변 전후에 남북되거나 월북한 문인들이 저작한 작품들을 발행하려면, 아직 그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동인들이나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65) “[북한의] 단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오직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되는 것이지 우리 법에 의한 설립절차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 1994. 2. 14. 선고 93카합2009 판결.

66) 『조선신보』 인터넷판, 2009. 11. 29일.

67)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저작권 교류의 환경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5.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합의

2005년에는 남북한 당국이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북한과 저작권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단체를 통해 한국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2005년 3월 21일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이를 받아들여, 남한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하여 저작권사무국 명의의 통지서를 전달했다. 통지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리용은 저작권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⁶⁸⁾ 통일부는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통지서를 통일부의 간접적인 입장표명에 대한 북측 나름대로의 반응으로 평가하고, “북측의 금번 통지는 비록 남북한 당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북측 저작권 담당기관의 입장표명인 만큼 이를 존중하여 남북저작권교류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통지를 앞으로 남북 저작권 교류 업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⁶⁹⁾

6.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 승인

이후 2005년 12월 31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측 저작물의 남측에서의 사용에 대한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한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전협상권을 부여했다. 즉,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남측의 사용 희망자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저작권사무국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⁷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부에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에 대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자)을 신청했고, 2006년 3월 14일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신청을 승인했다. 북한 측 사업 상대는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였다.⁷¹⁾

2009, 122면.

68) 북한 저작권사무국, “통지서”, 2005. 3. 15.

69) 통일부 보도자료, “남북 저작권 교류 절차에 북측 저작권사무국 통지사항 반영”, 2005. 4. 19.

70) 북한 저작권사무국·민족화해협의회 및 남측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문화협력위원회, “합의서”, 2005. 12. 31.

71) 통일부 보도자료,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2006. 3. 15.

7. 남한 법원과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공조

2005~2006년에는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남한 법원과 북한 저작권사무국 사이에 공조가 이루어졌다. 2005년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소위 ‘북한판 동의보감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 저작권사무국에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1년과 1982년에 출판하였던 『동의보감』(전 5권, 저작 허준, 번역 보건부동의원)의 저작권자가 과학백과사전출판사인지 아니면 보건부동의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⁷²⁾ 이에 2005년 11월 15일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장철순 부국장의 명의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답변서에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출판하였던 『동의보감』(전 5권, 저작 허준, 번역 보건부동의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현재 고려의학과학원)이며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당시의 출판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심양 고려민족문화연구원이나 남측에 『동의보감』에 대한 출판권을 저작권자나 출판권자가 양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고 적시되어 있었다.⁷³⁾ 2006년 3월 29일 우리 법원은 이 같은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답변을 받아들여, “허준의 동의보감 원전 25권을 번역하여 북한판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북한의 ‘보건부동의원(현재 고려의학과학원)’이라는 단체이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단지 북한판 동의보감을 출판한 출판사에 불과하므로,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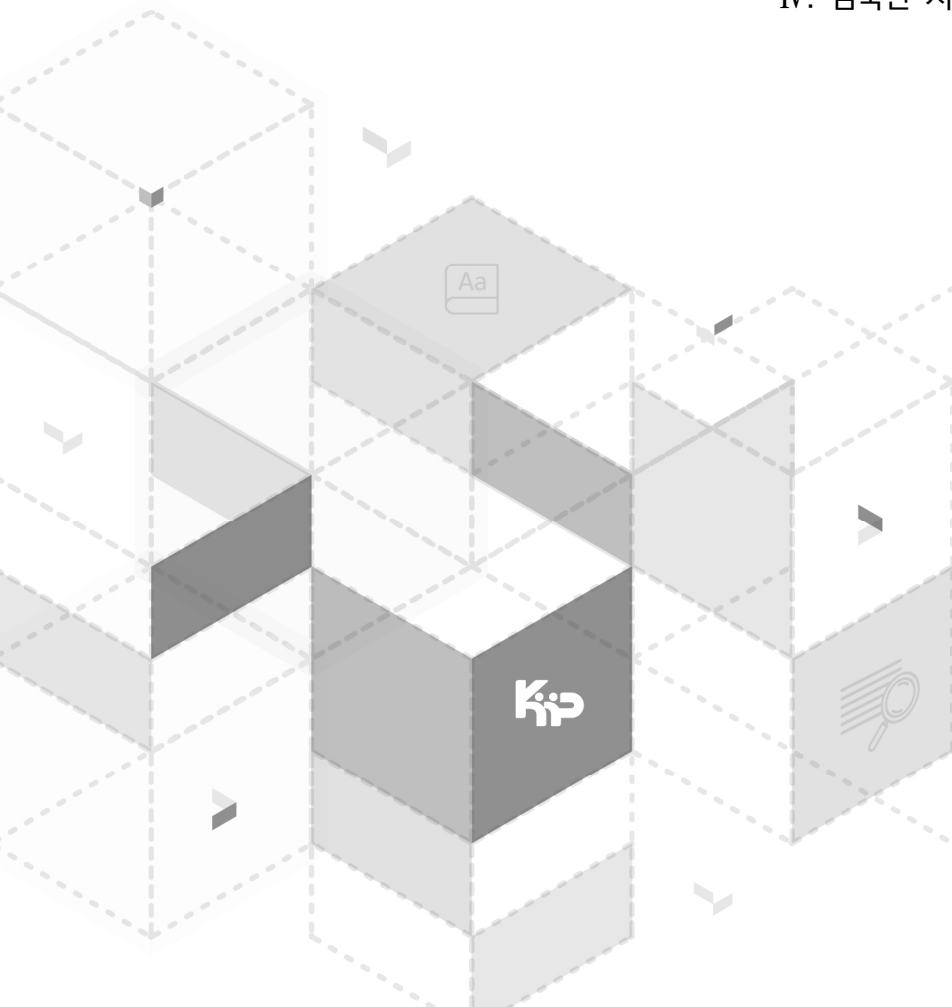
2005년 남북한 당국이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구축한 이른바 ‘2005년 합의’는 남북 저작권 교류의 안정적인 발전을 규율하기에는 다음의 한계가 있다. 첫째, 남북한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저작권 교류는 남북 양 방향이 아닌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사실상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의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 셋째, 저작권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남북 사이에는 아직 사법공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남북 저작권 교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사이의 제도적 협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72) 서울고등법원, “사실조회서”, 2005. 8. 22.

73) 북한 저작권사무국,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답변”, 2005. 11. 15.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협력 방안

- I. 대북제재가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에 미치는 영향
- II.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현황
- III. 기존 연구에서의 교류방안의 문제점
- IV. 남북한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I 대북제재가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에 미치는 영향

1. 지식재산권 교류와 연계성을 가진 대북제재 내용⁷⁴⁾

대북제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핵실험을 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제재를 결정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부터 2020년 2515호까지 총 20개의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제재를 다루고 있다. 이들 제재는 북한 농수산물 수출과 북한과의 합작사업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에 연간 유입되는 원유와 정제유의 총량을 제한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독자적인 북한제재이다. 독자적인 이행기구가 없는 국제기관인 UN의 힘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다.⁷⁵⁾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국제법 등 다른 분야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시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논의들이 국제법, 정치학, 외교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북제재에 대한 검토이므로 반드시 지식재산권 교류라는 관점과 그 검토 내용이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교류라는 관점에서 먼저 대북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북제재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및 관련물자의 수출금지

모든 회원국은 소총 및 경화기와 그 관련물자를 포함한 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의 북한으로의 직간접의 공급, 판매 또는 이송을 금지해야 하며, 관련 거래나 기술교육도 제한된다. 이러한 기술 교육에는 수리, 서비스, 재정비, 시험, 역분석, 마케팅과 관련된 물품의 운송에 관한 군사적, 준군사적 또는 치안 관련 교육, 서비스 또는 제조, 유지 또는 사용과 관련된 지원을 위한 교관, 고문 또는 기타 직원의 제공을 포함한다. 모든 회원국은 북한 군사력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거나 군사력의 지원이나 향상을 위한 수출에 기여한다면 그러한 공급, 판매 또는 이송에는 포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의 2270(2016년), 제8조 (a)와 (b)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a)에서는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북한 주민이나 단

74) 본 내용은 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문을 통해 작성됨.

75) 신법철, “대북제재 메커니즘의 이해”, 『법연』 62권, 한국법제연구원, 2019, 59-60면.

체에 의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제재 위원회에 그러한 목적을 위한 대상들의 전용을 막기 위해 취해진 수단이 통지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b)에서는 제재위원회가 특정 공급, 판매, 이송이 결의안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안별로 결정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 및 관련물자의 생산 등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교육, 기술지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제재위원회가 사안별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남북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은 물자의 교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 및 관련물자의 수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이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간접적으로 무기 및 관련물자의 수출금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무기 및 관련물자의 수출금지와 관련해서는 포괄규정이 적용되어 광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무기 및 관련물자의 수출금지와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2) 핵 확산 방지

모든 회원국은 핵무기, 탄도미사일과 기타 대량 살상 무기의 직간접의 공급, 판매 또는 이송을 금지해야 한다. 이때 금지되는 품목에는 전통적인 무기 관련 물자와 기술, 대량살상에 관한 민군 겸용 물자와 기술 등이 포함된다.

핵 확산 금지와 관련된 북한으로의 수입, 수출금지품목은 14번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추가되고 변경된 바 있다. 광범위한 범위의 화학전구체, 이중용도의 화학제조시설 및 설비와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2017년 가장 최근의 결의에 의하면 특별물자와 관련 품목으로서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의 출원 과정에서 공개되는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3) 여행금지

모든 회원국은 결의에 의해 지명된 자, 이들 지명된 자들을 대리하는 자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는 자 또는 결의를 위반하여 유엔제재의 회피에 조력하는 자, 금지품목의 운송을 위하여 여행하는 자로서 수리, 정비, 재단장, 시험, 역분석,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국의 영토로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리사나 전문가들은 과학, 기술관련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의에서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 여행금지 제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 방안의 하나인 인적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4) 특별교육과 훈련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핵 확산과 관련된 행위와 핵무기 발사 체제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교육과 훈련들에는 고급재료학, 고급화학공학, 고급기계공학, 고급전자공학과 고급산업공학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과학 및 기술협력

모든 회원국은 의료교류를 제외하고 과학 및 기술적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이때 협력의 중단 여부는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위원회의 결정이 요구되는 협력 분야는 핵과학기술, 항공우주공학기술, 고급제조기술과 방법이다. 이러한 특별교육과 훈련에 해당하는지는 북한정부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는지 또는 북한을 대표하는 자에 의한 것인지 등에 의해 결정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위원회에 의해 사안별로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6) 금융제재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북한이 회원국 내에 금융기관의 지사들을 설립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의 지사나 대표부도 폐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금융기관들과의 자국영토 내에서 합작투자회사 설립, 지분 공유, 결제대행 등을 중단해야 한다. 회원국들도 북한 내에 지사나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모든 회원국은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자국 내에서의 모든 공적 또는 사적 금융지원을 할 수 없다. 사안별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 내의 북한의 합작회사나 협력기관은 폐쇄되어야 한다.

(7) 포괄적 면제대상

미국의 대북제재규정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특허 및 상표를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에 관한 각종 거래는 제510.517조의 포괄적 면제대상(general license)으로 분류되어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된 신청 및 취득, 침해소송의 제기 및 방어에 대한 거래가 허용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북한 주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게 수수료와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대북제재의 지식재산권 교류 영향

표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교류는 UN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중 실용신안과 특허는 대북제재의 대상인 무기 수출이나 핵 확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이들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여 교류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대북제재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허용하던 과거보다는 더욱 강화된 상태로서 인도적인 차원의 교류나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는 교육 및 훈련과 과학, 기술의 협력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식재산권의 교류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과학,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 북한의 상표나 디자인을 남한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북한의 상표 중 등록을 통해 남한 내에서 라이선스가 가능한 것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수 등과 같은 인적 접촉이 반드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옥류관을 상표등록하고 남한에서 이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옥류관이라는 상표를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외에 실제 냉면제조기술 등의 전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서비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파견 등을 위한 인적 교류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인적 교류가 허용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상표등록을 통한 라이선스 사업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디자인의 경우에 상품매매가 자유롭지 않은 북한에서 디자인은 상품판매를 위한 중요 요소는 아닐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의 디자인 수준은 높지 않으며, 남한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런 북한의 디자인이 남한에서 등록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며,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디자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상표나 디자인의 라이선스를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금지되는 대북제재 상황하에서, 사용료를 획득할 수 없는 북한에게 상표나 디자인의 남북 교류는 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식재산에 관한 각종 거래가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거래보다는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II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현황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은 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과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남북한 당국 간 직접교류로서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마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징적 수준의 합의가 도출된 이래 2000년대 들어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합의한 바 있다. 즉, 남북한은 지식재산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제2항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 표 25 | 남북 합의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구분	합의 내용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제2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9조 제5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 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제1항)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제2조 제2항)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산을 보호한다.

이후 2000년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 등 지식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후 구체적인 후속 협의나 교류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WIPO협약과 베른협약 등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동 국제협약 관련 국제회의에서 남북한 대표단이 접촉한 사례도 있지만 계획되었거나 정례화된 접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부터 민간 차원에서 대북 작가의 문학 작품이나 고전의 국내출판, 예술품의 국내반입 사업, 북한의 보도 영상물과 가요 등의 국내 이용, 남북한 드라마 공동제작 등 저작권 분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북한에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었으며, 남한의 민간단체가 동 사무국과 저작권 중계 및 위탁 관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남북관계 상황의 악화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산업재산권 보호체제에 적극 가입하고 평양에 변리사 사무실을 개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남한으로부터의 특허 등의 출원이나 등록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남북한 교류협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북한은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한 직후 남한과의 저작권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는 소위 대남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 저작권 교류협력이 유용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산업재산권이 북한에 등록되고 북한 진출이 가속화될 경우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에 예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등을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정세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으나,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 현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향후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현 상황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준비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Ⅲ 기존 연구에서의 교류방안의 문제점

이미 기존의 여러 북한 지식재산권의 연구에서 남북의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한 교류방안들이 실현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남북한의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문제들이 뒤엉켜 예측불가의 새로운 방향으로 사안이 전개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에 교류협력방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단언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대북제재의 측면에서 그동안 제시된 교류방안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를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북 상호 간의 지식재산권의 인정을 위한 노력

지식재산권의 상호 인정은 남북의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협력을 다룬 보고서, 논문, 기사 등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다. 남북은 WIPO설립협약을 비롯하여, 파리조약, 베른조약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조약에 동시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남과 북이 이들 조약에 대한 체약국으로서 상호 간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에서 상호 특허 또는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인정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남한 국적자는 제3자의 명의로 북한에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호를 위하여 등록이 전제가 되지 않는 저작권의 경우에도 북한이 대리인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으나 북한 법체계의 비공개성,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자가 진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적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북한이 남한 국적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내용은 없다. 그러나 남한 국적자의 이름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남한 국적자라는 것이 등록 거부에 주요하게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 이처럼 상호 간에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이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남한 국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등록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남한 국적자라는 것이 등록 거부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의 실질적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유 외에 남과 북의 과학기술 발전수준이 상이하다는 것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조약에 따르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의 상호 인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다. 따라서 북한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남한에서 특허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남한의 특허법과 심사기준이다. 그렇다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기술수준이 낮은 북한의 특허발명이 남한에서 보다 높은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는 건수보다 남한 국적자가 북한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는 건수가 현저히 많을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상호 지식재산권 인정의 실익이 있다고 느낄지도 의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 지식재산권 인정에 대한 경제적 이익 부여, 출원절차 및 비용의 간소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외국인 출원 유도 방안 공유, 북한 주민의 외국 출원 조력 등을 유인책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국적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도록 결심하게 할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이를 실행해 본 바가 없으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들 방법 중 가장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남한 지식재산권 인정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남한에 등록을 위하여 남한 국적자의 북한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하여도 그 이익이 북한으로 송금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도 북한이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야 할 유인책이 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2. 상호 교역 확대를 통한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 노력

남북 간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남북 간의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상품유통, 즉 남북 교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교역은 2007년 이후 계속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건수나 금액 면에서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우 소폭의 연간 증가세를 보여왔다.⁷⁶⁾ 이러한 소폭의 증가세는 개성 공단의 철수 후에도 계속되었으나 2016년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교역이 중단된 상태이다. 교역의 급감과 중단은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결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전면적인 대북제재 수단이 이행되고 있어 교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도 공산품이 아닌 농산물이나 원자재가 교역대상의 주를 이루고 있어 지식재산권 교류로 발전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대안으로 북한의 특허권을 우리 기업이 양수하거나 실시권의 설정을 통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이루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 외국인이 권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리자는 국가라는 점, 기술수준이 낮아 우리 기업 중 이를 양수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이의 사업화를 위하여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대북결의안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76) www.unikorea.go.kr(2020. 8. 29. 방문).

IV 남북한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

1. 개관

남한과 북한은 각각 지식재산권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에 가입한 회원국이므로, 그 국제조약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상호 간의 지식재산권을 정상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남북한은 1992년의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의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조약과 합의 내용은 실제로는 지켜진 바가 없다. 만일 남한이 북한에게 이러한 조약과 합의 사항의 준수만을 내세우거나 기다리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교류협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상호 이익의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상반기 중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미국에서 22억 달러 적자, 일본에서 5억 달러 적자를 본 반면에, 베트남에서는 12억 달러 흑자, 중국에서는 11억 달러 흑자를 보았다.⁷⁷⁾ 단순하게 대비한다면, 한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선진국에게는 로열티를 더 많이 지불하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는 로열티를 더 많이 지불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이 북한보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북한에서 보호받을 남한의 지식재산권이 남한에서 보호받을 북한의 지식재산권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특허와 디자인은 등록 후 20년, 15년간 보호되고 상표는 반영구적으로 권리가 유지되어 앞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이 강한 남한에게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현재의 지식재산권 현황에 따른 협소한 시각으로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창의와 혁신을 장려하지 못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2001년에 비로소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현재는 특허, 상표 출원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⁷⁸⁾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복돋운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 북한도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와 국가경쟁력에서 이룬 성과를 참고하여 북한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77)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2019. 9. 20.

78) 2019년 중국의 특허 출원은 약 140.1만 건이며, 상표 출원은 약 783.7만 건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2019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발표”, 지식재산동향뉴스, 2020. 1. 28.).

그렇다면 남북한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게임(win-win game)이라는 인식에서 실천방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이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북한이 교류협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교류협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남한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실천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들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발전되거나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해결되는 종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요인의 충분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교류협력의 추진을 시도하는 것조차 어렵다.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이 남북경협의 선결과제라는 인식이 명확하다면, 남북관계나 국제정세와 무관하게 독립변수로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류협력 방안은 앞에서 살펴본 UN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UN과 미국의 제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경우에 가장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대금 지급의 문제이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있다면 남북한의 교류협력이라는 이상을 좇아 대북금융의 현실적인 업무를 수행해줄 금융기관이 나서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의 대금 지급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문제는 대북관계의 개선에 뒤따라 검토되는 후행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문제라는 독립적인 사안으로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두에서 제시한 두 가지 관점들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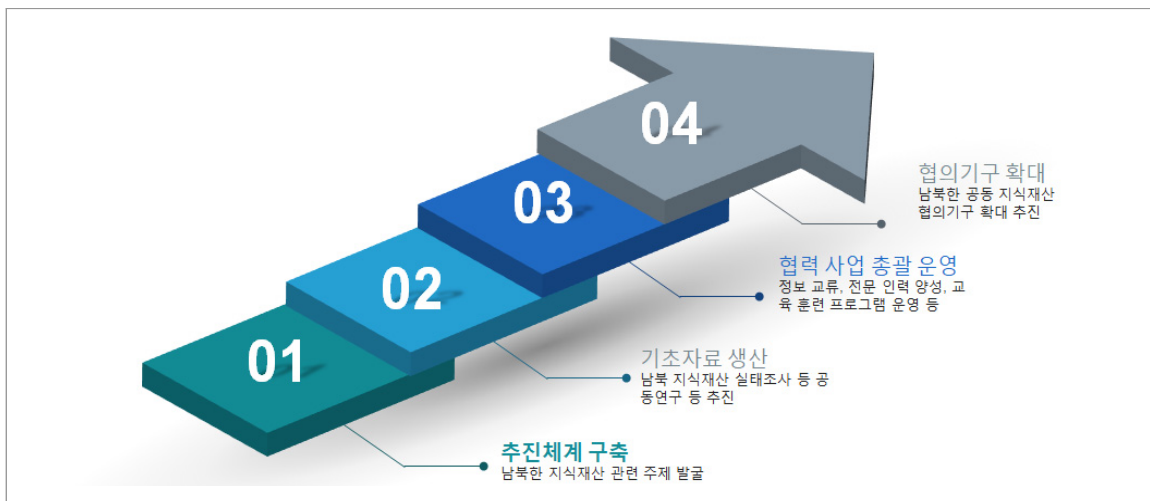
2.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1)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협력사업을 수립·실행하는 추진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전담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남한만 독자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 지원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지식재산협력센터(가칭)’를 설치 추진하여 운영 후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같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확대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지식재산협력센터(가칭)’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지식재산권의 통합법 제정과 국제 지식재산 허브국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남북지식재산협력센터(가칭)의 목적은 남북한이 지식재산교류협력의 허브로서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남북한 지식재산권통합의 촉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남북지식재산협력센터(가칭)에서는 남북한의 지식재산 실태조사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북한과의 사업 추진에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교류와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한 북한의 발명총국, 발명심의회, 특허대리사무소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콘택포인트를 운영 및 관리하여 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그림 8 | 남북지식재산협력센터(가칭) 발전 방향



장기적으로는 동 협력센터를 북한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인프라 내지 법적, 제도적 기반을 형성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연락과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소통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남북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적인 남북회담의 주체를 포함한 전반적 문제를 다루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인원이 상시 공동 근무하며 남북 당국 또는 민간 지식재산권 협력의 창구로 활용하여, 남북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협력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협력센터의 운영 예산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북청소년교류센터 등의 건립을 위해 남북 협력기금이 지원된 사례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지원⁷⁹⁾

남한의 선진화된 특허행정시스템을 북한에 지원하고, 남북한 특허정보를 교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IT는 ‘과학기술의 종자’로 여겨질 만큼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분야이며,⁸⁰⁾ IT를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남한의 경우 1992년부터 특허행정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달해 있다고 평가되며,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수립하여 국내외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료로 온라인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이러한 남한의 특허행정시스템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도 구축되고 있고, 남미까지 수출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업의 일환으로 남한이 북한에 특허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면, 북한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행정시스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자국의 IT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허정보 등이 표준화되어 남북한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북한의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세계 각국은 북한의 시장 가치를 바라보고 기존에 추진하지 못했던 잠재적 수요와 함께 많은 수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북한에 접수될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해 북한에 특허행정시스템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79) 본 내용은 최은석 교수(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의 자문을 통해 작성됨.

80) 선유정, “김정일시대의 과학기술중시사상: 과학기술중시사상의 변화와 그 의미”, 『북한과학기술연구』 제1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407면.

(3) 선행조사의 아웃소싱 지원사업

기존에 제시된 협력 방안 중에는 북한의 출원 특허발명 특히 외국인의 출원발명에 대한 선행 조사를 남한에서 대행해주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안은 아웃소싱을 해야 할 정도로 북한에서의 특허 출원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출원발명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현실성이 낮다. 또한 남한에 아웃소싱을 의뢰한다는 것은 북한의 지식재산권 담당자들이 북한의 엘리트 과학자들과 외국어 능통자들이라는 점에서 활용성이 낮을 것이다.

반면, 남한에서 북한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행조사의 아웃소싱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은 디자인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되기 전에는 비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비밀유지대상인 특허 출원발명의 출원이 철회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축적되기 전에는 비밀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북한에 아웃소싱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상표의 경우에는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 사회의 언어 사용 현황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아웃소싱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선행조사의 아웃소싱 대상으로는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자인부터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웃소싱을 통하여 북한은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남한은 우리의 심사시스템이나 법률을 북한에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기에 고려해볼 지원사업일 것이다.

(4) 지식재산권 전담 대리인 선임

남북한의 지식재산권이 상호 지역에서 실효성 있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남북의 지식재산권 행사를 대리할 전담 대리인을 정부 차원에서 선임해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가 해지되거나 완화된다 하여도 서로 다른 법체계나 사회체제로 인하여 남북의 지식재산권자가 스스로 남북을 방문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먼 장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정부 차원에서 남북의 지식재산권자들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창구를 단일화한 후 서서히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 추진 방안⁸¹⁾

가. 합의서 추진 목적 및 필요성

지식재산권 분야 남북한의 법제도는 유사한 점도 많으나 상이한 측면도 적지 않으며, 특히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 간의 상호 연계성이 구축되지 않고 있어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로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남북한 제도 간의 상호 조화성을 제고해 나가고 안정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상이한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를 필요한 부분에서 통합해 나가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합의서는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남북한이 공유하는 최소한의 규범적 근거로서 작용할 것이며, 남북한 지식재산의 교류협력은 물론 공동발전을 위한 안정적 장치로 기능할 것이므로 당국 차원에서의 합의서 체결 추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합의서 체결의 수준은 남북관계 발전 정도와 조화롭게 결정되어야 하는바, 현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과정을 규율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는 공통의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남북관계가 통합의 방향으로 진전되는 단계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 통합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서 체결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 간 합의서 체결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이며, △추진 과정에서 있어 다양한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 교류협력과는 구분된다. 먼저, 남북한 당국 간의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따라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하며, 동법 제4장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체결 및 비준되며, 일정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당국 간 합의서는 공개되며,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서 일부 발견되는 익명성이나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차원에서 인정되는 비밀보호주의가 당국 간에 적용될 여지는 적다.

또한, 남북한 당국 간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합의 대상의 선정, 합의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사전 공식 협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합의서 체결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장 부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분야를 관장하는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인바, 이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고려하에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국 간 합의서 체결은 사안 및 시기,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81) 본 내용은 이찬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통해 작성됨.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북합의서 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한 간에 통용되는 공통의 규범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간의 접촉과 회담을 정례화 하고 필요한 공동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합의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최초 단계에서는 남북한 당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같은 개별 사업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합의서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협력 합의서의 추진 대상은 당국 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서(시범 사업 포함)이다. 당국 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서는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분야 관장 당국 간의 합의서로서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및 자료의 상호 교환, 인적 왕래, 공동학술회의 개최 등 당국 간에 추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야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서이다.

민간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당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의 의제로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당국 간 공식 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이라도 남한의 지식재산권 담당 부서에서 북측의 상대 기관에게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제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추진

남북한이 각각 구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와 각종 출원 및 등록 절차 및 현황 자료들에 대한 당국 간의 공식적인 자료의 교환을 통해 민간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및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의 유효성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당국 간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정보자료 상호 교환에 대한 합의, 대상 정보자료의 제시, 정보자료 상호 교환의 주체, 상호 교환의 목적 및 그 방법 등이 될 것이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에 관한 합의서(안)〉⁸²⁾

남과 북은 지식재산권의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양측의 관련 법령 자료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각자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 중 남측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법과 규정, 시행세칙, 준칙 등을 남측에 제공한다.
 - ② 남과 북은 1항의 법령 자료를 매년 2회(6월과 12월)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 ③ 남과 북은 전달받은 법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적인 의문 사항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 ① 상대방으로부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 사실과 처리 계획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상대방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상대방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위임, 권리의 포기 주장 등 법률적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상대방이 발급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계약서, 확인서 등 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본 합의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 해결한다.
4.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남북한 당국자 간 인적 교류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기구에서 있었던 남북한 당국자 간의 우발적 접촉 사례를 발전시켜 남북한 당국자 간의 인적 교류를 계획적이고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그동안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북한 당국자의 남한 방문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학술 회의 개최나 WIPO 총회 등을 계기로 한 당국자 간 접촉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 당국과의 접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매개로 하여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남한의 당국자가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하다. 합의서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학술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개최 일시와 장소, 이동 경로(남북한 방문일 경우), 비용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상표, 특허 등의 상호 출원 및 등록 등의 추진

현재 남한 기업 등의 북한 내 직접 등록과 출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지며, 양측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의 출원, 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 출원 시 상대방에 지정된 대리인을 통하여 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⁸²⁾

이 방안은 대리인 및 제3국을 경유한 방법 등을 통해 별다른 준비나 법령개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향후 상대방 지역에서의 직접 출원 및 등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82) 허인,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특허청, 2019, 110면.

83) 윤권순,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추진 방안」, 통일부, 2004, 32-33면.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자 간 접촉이 성사될 경우, 동 방안에 대한 구상을 북한 측에 제시하여야 할 것인 바, 동 방안에 대한 정부 내 협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을 감안하여 직접 출원 및 등록 방식보다는 북한이 수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기 대리인 방식에 의한 출원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3.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1) 남북 지식재산 전문가 교류협의체 운영

지식재산권 분야는 저작권 분야를 제외하면 타 분야에 비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거의 없었다. 정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실무적인 교류와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에서 점진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는 교류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류협의체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정부는 교류협력 초기에 지원 및 보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산학연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여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협의체는 남북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 및 논의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실현을 위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통해 지식재산 교류협력의 분위기와 장을 조성하고, 정부에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지식재산 공동사업 및 행사 개발 추진, 연구발표회, 홍보출판, 연구활동 지원,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자로 발간 등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류부터 시작해야 하며 변리사회와 유관단체의 상호 방문 등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민간에서 처음부터 전문가 교류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초기에는 국가지식재산 위원회 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주도를 하고 산학연의 남북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단법인으로 발전하여 민(民)-관(官) 협력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 지식재산권법의 상호 교육

강화된 대북제재하에서는 인적 교류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교육도 용이하지 않는 실행 방안이다. 그렇지만 대북제재가 해지되거나 완화된다면 지식재산권법의 상호 교육은 시

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상호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다름 속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개방 전 중국 지식재산권법을 통하여 북한의 지식재산권법을 이해하고 짐작할 뿐 북한의 지식재산권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서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류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남북의 지식재산권법이 통일될 기회를 맞는다 하여도,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긴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첫 단계로서 지식재산권법의 상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남한의 지식재산권법을 북한 전문가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북한이 요구하는 북한 지식재산권의 남한 내에서의 보호가 어려움을 갖는 이유를 이해시킬 수 있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민국 국민이 산업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어떠한 성격을 가진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어서 지식재산의 상호 교류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식재산권 연구정보 제공 및 관련 도서 교환

작년에 북한은 조선족 변리사와 북한 특허사무소 간의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중국의 조선족 변리사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도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에 중국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협회⁸⁴⁾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주로 중국어로 된 지식재산권 관련 서적을 2019년 하반기에 북한의 변리사와 심사관에게 기증한 바 있다.⁸⁵⁾ 북한에서 지식재산 관련 서적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변리사와 심사관들의 실질적인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심사관은 물론 변리사도 국영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적을 요청하고 기증받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 북한의 태도는 전과는 달라진 변화의 움직임이고, 또한 심사관과 변리사를 관리하는 북한의 고위직에서 이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인 변리사와 심사관을 통한 교류와 협력은 다른 분야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한의 변리사와 심사관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도서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된 전문서적보다는 한글로 된 남한의 지식재산 도서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리사와 심사

84) 2013년에 설립되었고, 약 150명 내외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하는 조선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85) 대한변리사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2019. 12. 21. 개최된 '중국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협회 2020년 신년회'에 참석하여, 당초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북한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만나서 지식재산 전문서적 기증 및 세미나 개최 등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유엔안보리 제제로 인한 귀국 절차 관련)으로 인하여 북한 측에서 참석을 못 하게 되어 만남이 무산됨. 한편, 이보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영국 런던에서 2019. 9. 19. 개최된 '2019 Global Network of National IP Practitioner Associations (GNIPA) Summit' 미팅에서 WIPO의 NGO and Industry Relations 책임자 Mr. Thomas Bombelles에게 WIPO에서 북한에 지식재산 관련 서적을 기증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견해를 물어보았으나, 민감한 문제라는 언급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체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이 문제를 WIPO에 직접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음.

관에게 한글과 영어로 된 지식재산 도서를 제공해주는 것은 북한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의 기초를 닦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한 교류협력을 구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그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지식재산 도서의 기증은, 중국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협회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허수수료 체계 등 연구정보의 제공도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를 위해 실용적이며 유용한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먼저 정비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가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 수수료 체계의 정비이다. 현재 북한의 특허 등 수수료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남한의 수수료 체계와 대비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수수료 체계를 조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그 연구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은 북한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수수료 금액 자체만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출원을 장려하기 위한 수수료 정책을 펴 것인지, 북한 수요자들의 구매력 증가 요소를 수수료에 반영할 것인지, 또는 채도하는 외국 출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수료 인상폭은 어느 정도까지일 것인지 등의 관점에 따른 북한 수수료 체계의 연구결과를 제공한다면, 북한은 이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상호 교류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 제3국을 통한 정기적인 지식재산권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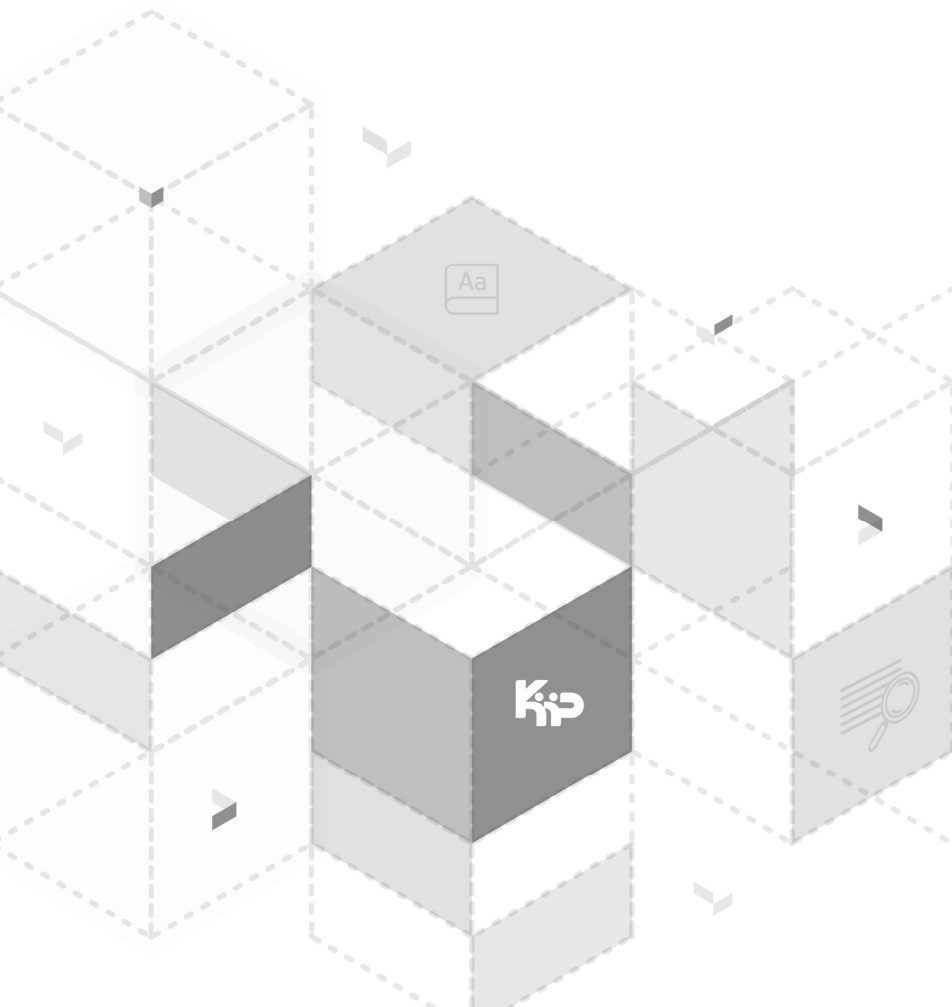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북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 세미나를 위해 남한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남한에서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2018년에 대한변리사회는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북한의 발명총국, 상표공업도안사무국, 저작권사무국 및 20여 개의 북한 특허사무소 대표에게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 논의를 위한 방문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여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세미나를 통한 교류를 위해서는 제3국인 중국을 통해 남북한 지식재산권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앞의 전문도서 제공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중국, 조선족 변리사와의 교류가 구축되어 있어, 중국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한이 주최자로서 북한의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남북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의 교류를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남한과 북한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어야 남한과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가 상대 지역에서 널리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남북경제협력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발전되지 못하면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실제로 진척되었거나 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을 남한이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남북의 상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방안의 도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 교류협력 방안의 도출 과정도 협상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협상에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들 사이에 협상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 불균형을 이루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협상력은 약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장에 나설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교류협상의 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동기를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발굴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하지만 지식재산권 연구정보 상호 관련 도서 교환 같은 지원사업은 북한의 니즈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북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 측에 줄 필요가 있다. 물론 남한의 경우에도 북한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선행조사 아웃소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시된 교류협력 방안들은 정부가 그 실행에 중심이 되도록 추진되었으나 현행 대북제재하에서 정부 중심의 교류협력 방안들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북제재가 해지되거나 완화된다 하여도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을 이루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먼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나 연구자들 간의 교류, 법령 등 문헌의 교류 등을 위하여 전문가 교류협의체의 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민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지식재산 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남북지식재산협력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남북한 지식재산권통합의 촉매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남북한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로의 확대를 강구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 검토가 이어지고 또한 더 많은 실천 방안들이 논의된다면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이 실제로 시작되고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철, 「북한법연구의 현황과 과제-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하여」,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 1989.
- 권순택,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발명저널」 통권4호, 2002.
- 권재열 외 8인, 「북한의 법체계: 그 구조와 특색」, 집문당, 2004.
-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 김광길,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토론회 자료집」, 2018.
- 김영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통일연구원, 2006.
- 김혜정,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현황 및 제언”,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제2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 문삼섭, “북한의 상표법 및 원산지명법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21」 통권92호, 특허청, 2005.
- 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박정원, “북한의 발명법에 관한 분석”, 「아시아법제연구」 제01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 박종배,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북코리아, 2011.
- 법무법인 올촌 북한팀·매일경제중소기업부, 「북한 투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매일경제신문사, 2018.
- 법무부, 「남북비교법령집」, 법무부, 2015.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평양), 1997.
- 서지영, 「중국특허법」, 한국특허아카데미, 2006.
-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9.
- 신지연 외,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방안」, 특허청, 2008.
- 윤대규·임을출 편저,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울 아카데미, 2006.
- 육소영 외,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5.
- 이길상, “동·서독의 산업재산권 제도 통일”, 「지식재산21」 통권40호, 특허청, 1996.
- 이승룡, “남북한 지재권 협력의 준비와 추진”,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제39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 이승룡, “남북한 디자인법의 통합모델 연구”,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이은영, 「북한의 법이론 및 법체계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이은정, “북한의 지적재산권”, 「북한법연구」 제5호, 북한법연구회, 2002.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저작권연구자료 1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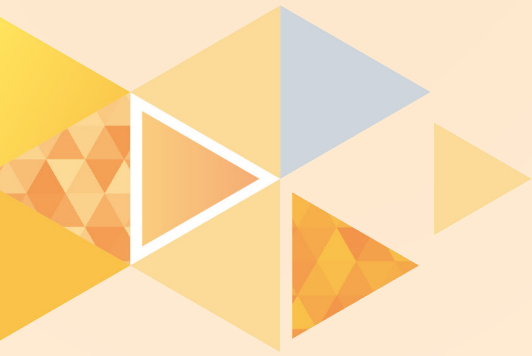
1992.

- 제성호, “통일을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전략”, 「통일정책 연구」 제13권 1호, 통일연구원, 2004.
-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 한울, 2017.
-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최은석, “남북한 저작권 법제 비교 연구”, 「2010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0.
- 최은석,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통일문제연구」 제55호, 평화문제연구소, 2011.
- 최은석·허인,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 2014.
- 특허청,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 안내”, 2001.
- 한국지식재산학회, 「북한 지재권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례 분석 연구」, 특허청, 2015.
-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한올아카데미, 2016.
- 張萬明, 「涉台法律問題總論」, 法律出版社, 2002.
- 中國年鑑社, 「中國年鑑」, 中國年鑑社, 2002.

대외협력 - 국가별 환경분석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인 권택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화 02-2189-2600
홈페이지 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대외협력

국가별 환경분석 ...

남북한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9-11-91116-32-8
DOI : 10.8080/P9791191116328